

유럽의 좌파운동과 기본소득

- 독일 좌파당 Die Linke 대표 카티야 키핑 Katja Kipping 초청강연회 자료집

지은이 **카티야 키핑 외**

펴낸이 **노동당**

펴낸곳 **노동당**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발간일 2016년 7월 10일

전화 02.6004.2000

전자우편 laborkr@gmail.com

◎ 노동당, 2016

이 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노동당(laborkr@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위 대표전화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카티야 키핑^{Katja Kipping} 독일 좌파당^{Die Linke} 대표 초청강연을 열면서

금민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좌파의 국제적 연대는 일어난 일에 힘을 합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생각을 나누고 교류하며 공통의 관점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카티야 키핑 독일 좌파당 공동대표의 초청강연을 개최합니다.

키핑 대표는 어제 7월 9일 폐막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서울대회에 기조발 제자로 참석하여 사회적 공화주의, 사회적 자유, 모든 사람의 경제권력의 보장, 사회경 제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에 대해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어제 대회는 무사히 마쳤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제 끝나지 않았고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첫 날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우리가 오늘부터 실현해야 할 과업 가운데 중요한 하나일 것입니다. 카티야 키핑 대표의 오늘 강연의 주제는 "유럽의 좌파운동과 기본소득"입니다. 유럽좌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에서 기본소득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강연 내용은 우리들에게 직접 관련된 주제도 있을 것이며, 또한 유럽연합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독일좌파의 입장을 알게 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하여 우리의 관점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점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카티야 키핑 대표는 내일 11일 (월) 오전 11시에 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으로 공식일정을 마칩니다. 오늘의 초청강연이 우리 당과 한국 좌파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T. 카타야 키핑 Katja Kipping 독일 좌파당 Die Linke 대표의 글 01. 기본소득과 유럽좌파의 미래: 민주적 - 사회적 - 생태적 06 Das Grundeinkommen und die Zukunft der europäischen Linken: demokratisch – sozial – ökologisch 15 02. 민주주의 일반으로서의 기본소득. 만인의 사회적 자유와 경제적 권력의 보장 24 Grundeinkommen als Demokratiepauschale. Absicherung sozialer Freiheit und ökonomischer Macht aller Menschen 31

)1. 기본소득 모델의 다채로운 세계?	
- 진정한 의미의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신자유주의적 변형태에 관하여	
가브리엘레 슈미트 ^{Gabriele Schmidt}	
(브레멘주 기초의원, 좌파당 '기본소득 활동그룹' 대변인)	4(
02. 독일 좌파당 ^{Die Linke} 대표 카티야 키핑 ^{Katja Kipping} 의원에 관한 간략한 소개 금민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45
)3. 해방적 기본소득과 탈자 본주 의 이행	
Emancipatory Basic Income and a Transformation to Postcapitalism	
금민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5/

I .

카티야 키핑Katja Kipping 독일 좌파당 Die Linke 대표의 글

기본소득과 유럽좌파의 미래: 민주적 – 사회적 – 생태적

Das Grundeinkommen und die Zukunft der europäischen Linken: demokratisch – sozial – ökologisch

카티야 키핑 Katja Kipping (독일 좌파당 공동대표/연방의회 의원)

청중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 좌파당의 공동대표 로서 여러분께 저희 당의 진심어린 인사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여러분의 활동은 모든 좌파를 위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나라에서 강력한 좌파를 가질 경우에만 현존하는 세계를 좀 더 나은 세계로 바꿀 수 있 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낫다 함은 노동과 삶의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민 주적이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지하여 말하자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공산주의 선언』, 1972, 482)입니다. 연합은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토대의 보장입니다. 그러한 토대는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목표는 자연자원을 소중히 여겨 우리의 후손이 사용하고 향유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는 사회입니다. 칼 맑스처럼 날카롭게 표현하자면, 현재의 사회들은 대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상태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자본』, 3권, 1983, 784).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여러분의 당의 대표자들이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전화에 관한 기본 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를 함께 조직하고 함께 만들어낸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탁월한 노고에 대해 저는 커다란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파에게 중요한 일은 긴급한 질문들을 파악하고 해방적 효과를 낳을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 부분으로 저의 강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 1) 유럽 좌파는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가?
- 2) 좌파적 유럽정책과 기본소득 선각자들, 사회적 운동들, 정당들
- 3) 생태적 문제와 기본소득

1. 유럽 좌파는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가?

시간상의 이유로 제 강연을 세 가지 도전에만 한정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1) 유럽, 곧 유럽연합은 시민들과 그들의 민주적 제도들의 연합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유럽연합은 경제영역과 금융영역에서의 힘센 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내외적으로 대변하 는 제도들인 유럽위원회Europäische Kommission, 유럽중앙은행Europäische Zentralbank, 국제통 화기금^{IMF}이 목을 조르고 있는 유럽입니다.
- 2) 유럽, 곧 유럽연합은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전의 최소한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 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각지대가 아주 많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억압적인 보장시스 템들의 구조물일 뿐입니다. 유럽을 담장으로 둘러싸고, 이주하는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사회보장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자유이동의 권리는 축소되었습니다. 망명권신청자를 규율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에서 점점 더 많이 약화되었고 매우 빈약한 사회부조마 저 유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3) 유럽연합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긴 '생태발자국'을 가집니다. (글로벌 헥터는 환경소 모를 측정하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척도입니다. 글로벌 헥터에는 자연이 해당 자원

을 재생하고 쓰레기를 받아들이는데 필요로 하는 면적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잘못 경작된 면적도 포함됩니다.) 유럽연합 사람들의 '생태발자국'은 중국인보다 두배나 많고 인도인보다 다섯 배나 많아서 글로벌 핵터로 2,7 핵터입니다. 유럽연합의 제국적 경제와 자원갈증이 지구의 남반구 나라들에 초래한 환경재앙은 측정 불가능합니다. 유럽연합과 미합중국 사이에서 계획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인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는 유럽의 힘센 자들이 원하는 것인데, 유럽의 환경기준을 떨어뜨릴 것이며 장차 더 나은 환경기준을 정하는 일도 투자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해지는 유보조건이 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하여 먼저 집중하여 말씀드리고, 세 번째인 생태적 문제에 대해 활을 팽팽히 당기는 일은 끝부분으로 미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 저는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2. 좌파적 유럽정책과 기본소득 - 선각자들, 사회적 운동들, 정당들

먼저 "자유롭고 통합된 유럽"을 위한 근거문서, 소위 '벤토테네 선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문서는 이탈리아 반파시스트였던 알베르토 스피넬리Altiero Spinelli, 에르네스토로씨 Ernesto Rossi, 에우게니오 콜로르니 Eugenio Colorni 가 1941년 벤토테네 섬에서 구금되어 있던 시기에 작성되었습니다. 스피넬리는 1970년부터 1976년까지 유럽위원회의 구성원이었으며 1976년부터는 유럽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을 위한 계약논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참여했습니다. '벤토테네 선언'에는 진보적인 경제생활의발전에 관한 문구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기술의 덕택으로 삶에 필수적인 재화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이와 같은 거의 무제한적 능력이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비교적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의식주와 인간 존엄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안락을 보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제적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대한 인간적 연대는 그럼에도 결코 자선의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형태는 수급자를 비참하게 만들며,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약을 만들어낸다. 이와 정반대로 노동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져야만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노동 유인과 저축 동기를 줄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

도 빈궁에 의해 억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 받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선언의 작성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유럽이 사회적 곤궁으로부터의 자유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보장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 명백했습니다. 이 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동의 주권자일 자유. 사회적 생산을 함께 결정할 자유도 여기 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소득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에서 노동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그들 자신이 신임하는 사람 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선언의 작성자들은 그밖 에도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소비자와 국가와 공공을 협박할 수 있는 경제부문을 국유화 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유화되지 않은 부문들을 협동조합적 경영으로 이관 하는 개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선각자들에게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유럽이란 모든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와 "모든 시민이 정치적 사안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를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태생의 사회철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민주적이며, 인간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를 향한 경로와 과정을 선전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자연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어야 하며, 대신에 기술과 비이성적인 사회적 세력들과 비민주적인 제도 들에 대한 지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제한적 경제성장, 병든 인간을 만 들어내는 경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권력이었습니다. 프롬에게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제와 정치에서 실제로 그들의 적극적인 공동결정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는 물질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보 장하는 것과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결합되는 것이 포함됩 니다. 주주와 콘체른 경영자들의 생산에 대한 결정권은 극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소비자 들의 권리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조 Blaschke 2010, 279), 에리히 프롬을 통해 우리는 다른 유럽에 대한 관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생산과 삶의 방식에서 생태 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이며, 사회적인 유럽.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유럽, 대내적 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반사회적이며, 반생태적이고,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유럽연합과는 완전히 다른 유럽일 것입니다.

유럽, 결국 유럽연합을 민주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유럽의 민주주의와 연대성과 평등을 위한 시민서언"Bürger*innenmanifest für Europäische Demokratie, Solidarität und Gleichheit 의 과제입니다. 이 '선언'은 삼년 동안 유럽 모든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한 60여 차례의 행사를 거쳐 만들어졌고 2014년 유럽의회 선거 직전에 성안되었습니다. 선언은 의회민주주의의 관철을 위한 제안들, 예컨대 유럽의회에 완전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의원의 선출도 국민국가를 초월하는 명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여러 제안들과 유럽의 정치제도들의 민주화와 새로운 제도의 민주적 수립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민청원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수단들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모든 지역에서의 공개입찰은 시민들에게 승인되어야만 하며, 은행부문은 엄격하게 공익적 기능에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전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과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러한 '선언'에서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언'에 담긴 기본소득은 유럽연합의 모든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언'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보면,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살기 위한 노동, 또는 더 빈번해지는 경우로서 단순히 연명하기 위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시간에 의해 사람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의 강력한 수단이다."(European Alternatives 2013) 적극적이며 통합적인 유럽연합시민권의 증진은 기본소득의 목적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을 위한 유럽 시민이니셔티브' 활동의 결과로서 그 사이에 '무조건적 기본소득유럽' UBIE - Unconditional Basic Income Europe 이라는 네트워크가 성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의 활동가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네트워크의 목표는 잘 알려진 네가지 기준(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충분성)의 기본소득을 유럽, 그리고 당연히 전세계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국제적인 사회운동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장비판적인 탈성장 운동입니다. 6주 전에 독일에서는 최초로 두 운동의 공동론회가 열렸는데, 정치적 목표의 공통성과 정치적 개입에서의 공통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네트워크의 설립자 중 몇 분은 정치적 개입을 통해 중요한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회는 압도적인 다수로 유럽위원회와 회원국 각국에게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 배제를 막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라고 의결하였습니다. 유럽의회 의결의 기초가 된 보고서를 유럽의회에 제출한 사람은 한번은 독일 좌파당의 유럽의회 의원이었으며 다른 한번은 포르투갈 공산당의 유럽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권고안은 2014년 저희 당의 유럽의회 선거공약에 들어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을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구조물로 만드는 것은 '유럽 민주주의 운동 25'DIEM25-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5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전제정치적인 강력한 제도들과 로비스트들은 유럽인들이 자신의 화폐와 금융, 경제와 노동조건, 그리고 자연환경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비민주적인 제도들의 뒷방에서 결정권이 행사되는 상태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경제와 정치에 대한 통제와 민주적 영향력 행사가 다시 획득되어야만 합니다.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당연히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럽 민주주의 운동 25'의 목표입니다. 그리스의 전 재무장관이며 '유럽 민주주의 운동 25'의 엔진인 야니스 바루파키스 Yanis Varoufakis와 이 운동의 많은 참여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하여 명확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Varoufakis 2016) 기본소득은 사회적 부를 위에서 아래로 재분배하고 이와 함께 시민들의 물질적 형성력을 강화하는 과제를 가진다고 바루파키스는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은 사회적인 유럽연합시민권의 표현이며,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사각지대가 아주 많고 억압적인 자선시스템을 폐지하는 일종의 민주주의 일반입니다. (Kipping 2016)

유럽의 좌파운동과 사회운동들은 유럽 이념의 실현과 유럽연합의 개조에서 기본소득, 정치제도들의 필수적인 민주화, 경제와 금융섹터의 민주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유럽의 많은 좌파정당들과 사회운동들이 예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해 왔으며, 강령으로 구체화되기도 했습니다. (Blaschke 2012a, 2012b) 독일의 좌파 내부에서도 기본소득은 격렬히 토론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열정적인 찬성론자들도 있듯이열정적인 비판자들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핀란드,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의 좌파정당들에서 핵심의제로 토론되었고, 최근에는 많은 당들의 강령에 도입하였습니다. 포데모스, 핀란드 좌파연합, 오스트리아 공산당의 경우가그렇습니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 물질적 보장을 부여하며 경제적으로 압박받지 않도록 하며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좌파적이며 해방적인 발상은 기본소득이 사회적이며 민주적인 유럽의 형성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유럽좌파의 미래는 사회적이며 민주적인 유럽의 이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민주적 유럽을 향한 경로와 수단을 광범위한 민주적 토론에서 정치적인

다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관점에서, 그리고 유럽의 많은 좌파들의 관점에서도, 기 본소득은 그러한 경로와 수단에 속합니다.

3. 생태적 문제와 기본소득

오늘날 생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는 절대로 떼어서 논의될 수 없습니다. 자연자원을 덜 소모하는 것과 환경파괴와 오염의 중단 - 이러한 모든 것은 다른 종류의 생산양식 및 소비양식을 전제합니다. 이윤중심적인 생산논리와 투자논리는 사람들의 복지와 공 공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의 민주적 조직에 자리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생산의 중 심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사회적 효용이며, 생산은 자연자원의 지속성과 보전에 대 한 필요와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의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는 첫째, 오직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모 든 사람이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기본소득이 다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긴급한 재구조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의 해체가 삶에 대한 염려를 발생 시키지 않은 채 진행되려면 반드시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반생태적이며 자연자원을 극도로 많이 소비하는 일자리에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얽매여 있는 사람은 빈곤해 지지 않기 위하여, 또는 억압적인 사회복지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생태적 전환 의 친구가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사양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안심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삶과 참여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밖에도 기본소득은 노동시간단축과 시간주권을 촉진시키며, 연대경제의 건설에도 이바 지합니다. 좌파적인 성장비판의 관점에서도 기본소득은 결코 뺄 수 없는 전환프로젝트 입니다. 기본소득운동과 탈성장운동은 사회적 안전, 민주주의, 노동시간단축, 시간주권 및 연대경제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서로 만나게 됩니다. (Conference UBI-Degrowth 2016) 운동이자 정당으로서 유럽좌파는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블록인 유럽을 사회 경제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도전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청중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사회운동들과 좌파정당들에게 기본소득은 사회의 사회경제적 전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유럽의 좌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확신하기에, 전 세계의 좌파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 연설에 주의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및 출처 〉

- Blaschke, Ronald (2010), Denk' mal Grundeinkommen! Geschichte, Fragen und Antworten einer Idee. In: Blaschke, Ronald/Otto, Adeline/Schepers, Norbert: Grundeinkommen. Geschichte – Modelle – Debatten, Berlin, S. 9-292
- Blaschke, Ronald (2012a), Von der Idee des Grundeinkommens zur politischen Bewegung in Europa – Entwicklung und Fragen. In: Ronald Blaschke/Adeline Otto/Norbert Schepers (Hg.), Grundeinkommen. Von der Idee zu einer europäischen politischen Bewegung. Mit einem Vorwort von Katja Kipping, Berlin, S. 17-62
- Blaschke, Ronald (2012b), From the idea of a Basic Income to the political movement in Europe, Berlin; https://www.rosalux.de/fileadmin/rls_uploads/ pdfs/rls_papers/Papers_Basic-Income_Blaschke-2012pdf.pdf
- Conference UBI-Degrowth (2016), Themes of conference; https://ubi-degrowth. eu/en/themes
- European Alternatives (2013), Citizens Pact for European Democracy;
- https://citizenspact.eu/citizens-manifesto/english/
- European Parliament (2008), Reprot on promoting social inclusion and combating poverty, including child poverty, in the EU;http://www.europarl.

- 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REPORT+A6-2008-0364+0+DOC+XML+V0//EN
- European Parliament (2011), Role of minimum income in combating poverty and promoting an inclusive society in Europe; http://www.europarl.europa.eu/sides/ getDoc.do?type=TA&language=EN&reference=P7-TA-2010-375
- http://linksfraktion.de/reden/neues-europa-entsteht-unten-2016-02-09/
- Kipping, Katja (2016), Ein neues Europa entsteht von unten, Rede bei DiEM 25 am 09.02.2016;
- http://linksfraktion.de/reden/neues-europa-entsteht-unten-2016-02-09/
- · Marx, Karl (1938), Das Kapital, Band III, in: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25, Berlin.
- Marx, Karl/Engels, Friedrich (1972):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in: Karl Marx/Friedrich Engels: Werke. Band 4, Berlin, S. 459-493.
- Spinelli, Altiero/Rossi, Ernesto/Colorni, Eugenio (1941), Manifest von Ventotene; http://www.europarl.europa.eu/brussels/website/media/Basis/Geschichte/ bis1950/Pdf/Manifest_Ventotene.pdf
- · Varoufakis, Yanis (2016), Schweiz ist ideal für Experimente mit dem Grundeinkommen. Der frühere griechische Finanzminister Giannis Varoufakis wirbt für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http://www.tagesanzeiger. ch/schweiz/standard/die-schweiz-ist-ideal-fuer-experimente-mit-demgrundeinkommen/story/23669824

Das Grundeinkommen und die Zukunft der europäischen Linken:

demokratisch – sozial ökologisch

Katja Kipping

Meine Damen und Herren, liebe Mitstreitende, ich freue mich, vor Ihnen sprechen zu können.

Ich möchte Ihnen als Ko-Vorsitzende der Partei DIE LINKE in Deutschland die herzlichen Grüße unserer Partei übermitteln.

Ihr Wirken hier in Korea ist wichtig für alle Linken. Denn nur wenn wir in allen Ländern eine starke Linke haben, können wir die bestehende Welt zu einer besseren verändern. Besser heißt, dass die Bedingungen für Arbeiten und Leben sozial gerecht, demokratisch und ökologisch nachhaltig gestalten.

Unser Ziel ist, mit Karl Marx und Friedrich Engels gesprochen, eine "Assoziation, worin die freie Entwicklung eines jeden die Bedingung für die freie Entwicklung aller ist" (Marx/Engels 1972: 482) Assoziation steht für Demokratie. Demokratie und freie Entwicklung erfordern soziale und ökonomische Basisabsicherungen, die jeder und jedem Menschen zustehen, einfach weil er Mensch ist.

Und unser Ziel ist darüber hinaus eine Gesellschaft, die die Naturressourcen schont und die die natürliche Umwelt erhält, damit unsere Nachfahren sie nutzen, sie genießen und sich an ihr erfreuen können. Oder wie Karl Marx zuspitzte: Die jetzigen Gesellschaften haben die Erde den nachfolgenden Generationen verbessert zu hinterlassen (vgl. Marx

1983: 784).

Von daher bin ich dankbar, dass Vertreter*innen Ihrer Partei die Konferenz des Basic Income Earth Network zur sozialökologischen Transformation der Gesellschaft mit organisiert und mit gestaltet haben. Ich habe großen Respekt vor dieser hervorragenden Arbeit: Denn für Linke ist es wichtig, drängende Fragen aufzunehmen und Antworten vorzuschlagen, die eine emanzipatorische Wirkung beinhalten.

Meinen Vortrag möchte ich in drei Teile gliedern:

- 1. Vor welchen Herausforderungen bezogen auf Europa steht die europäische Linke?
- Linke Europapolitik und Grundeinkommen Vordenker, soziale Bewegungen,
 Parteien
- 3. Die ökologische Frage und das Grundeinkommen

1. Vor welchen Herausforderungen bezogen auf Europa steht die europäische Linke?

Aus Zeitgründen möchte ich auf drei Herausforderungen beschränken?

- 1. Europa, die Europäische Union ist keine Union der Bürger*innen und derer demokratischer Institutionen, sondern es ist ein Europa im Würgegriff von Institution, die die Interessen der Mächtigen im Wirtschafts- und Finanzbereich vertreten, nach innen und nach außen: Europäische Kommission, Europäische Zentralbank, Internationaler Währungsfond.
- 2. Europa, die Europäische Union ist auch keine Gemeinschaft, die allen Bürger*innen das Mindestmaß an sozialer Sicherheit und die sozialen Grundrechte gewährt, sondern es ist ein Gebilde mit einem sehr lückenhaften und z. T. sehr repressiven Sicherungssystemen. Das Recht auf Freizügigkeit wird dadurch unterwandert, dass Grenzzäune um Europa gezogen werden und das Recht auf soziale Absicherung einwandernden EU-Bürger*innen verwehrt wird. Auch das Asylbewerbergesetz wird in der Substanz immer mehr geschleift, die viel zu niedrigen Sozialleistungen werden unter Vorbehalt gestellt.

3. In der Europäischen Union Lebende haben einen sehr großen ökologischen Fußabdruck: 4,7 globale Hektar1). Das ist doppelt so viel wie ein Chinese hat, fünfmal mehr als ein Inder, global sind es 2,7 Hektar. Die über die imperiale Ökonomie und den Ressourcenhunger der europäischen Wirtschaft verursachten Umweltschäden in den Ländern des globalen Südens sind unermesslich. Das geplante Freihandelsabkommen zwischen Europa und USA,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dass die Mächtigen in Europa wollen, würde Umweltstandards in Europa senken bzw. zukünftige qualitativ bessere Umweltstandards unter Vorbehalt der Zustimmung der "Investoren" stellen.

Ich möchte zuerst auf die genannten Punkte 1 und 2 konzentrieren, zum Schluss den Bogen zur ökologischen Frage, also zu Punkt 3 spannen – alles unter dem Gesichtspunkt des Grundeinkommens.

2. Linke Europapolitik und Grundeinkommen - Vordenker, soziale Bewegungen, Parteien

Schauen wir uns zuerst ein Begründungsdokument für ein "freies und vereintes Europa" an – das sogenannte "Manifest von Ventotene". Verfasst wurde es von den italienischen Antifaschisten Altiero Spinelli, Ernesto Rossi und Eugenio Colorni während ihrer Gefangenschaft auf der Insel Ventotene im Jahr 1941. Spinelli war von 1970 bis 1976 Mitglied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und ab 1976 Abgeordneter im Europäischen Parlament. Er war maßgeblich an der Vertragsdebatte für eine Europäische Union beteiligt. Im "Manifest von Ventotene" heißt es in einer Passage zur Entwicklung eines progressiven Wirtschaftslebens: "Die dank der modernen Technik beinahe unbegrenzte Leistungsfähigkeit der Massenproduktion lebensnotwendiger Güter gestattet heutzutage, allen mit verhältnismäßig geringen sozialen Kosten, Wohnung, Nahrung und Kleidung zu sichern, so wie ein für die menschliche Würde unverzichtbares Minimum an Komfort. Die menschliche Solidarität denen gegenüber,

¹⁾ Der globale Hektar ist ein international vergleichbares Maß zur Messung des Umweltverbrauchs. Er beinhaltet die Fläche, die die Natur bräuchte um Ressourcen zu erneuern und den Abfall aufzunehmen, inkl. direkt verbauter Fläche.

die im Wirtschaftskampf unterliegen, darf jedoch keine karitativen Formen annehmen, welche den Empfänger demütigen und gerade jene Übel erzeugen, deren Folgen man zu bekämpfen wünscht. Man soll im Gegenteil eine Reihe von Maßnahmen ergreifen, die jedem bedingungslos einen angemessenen Lebensstandard ermöglichen, sei er arbeitsfähig oder nicht, ohne indes den Anreiz zum Arbeiten und zum Sparen zu verringern. So wird niemand mehr aus Elend dazu gezwungen werden, abwürgende Arbeitsverträge anzunehmen."

Klar war also den Verfassern des Manifests, dass ein freies Europa auch die Freiheit der Menschen von sozialer Not und demütigender sozialer Absicherungen beinhaltet, ebenso die Freiheit, Souverän eigener Arbeit zu sein und gesellschaftliche Produktion mitzubestimmen. So schlagen sie neben dem Grundeinkommen vor, dass die Arbeiter die eigenen Vertrauensleute frei wählen dürfen, um gemeinsam die Bedingungen zu bestimmen, unter denen sie ihre Arbeit leisten. Die Verfasser des Manifest schlagen außerdem vor, diejenigen Wirtschaftszweige zu verstaatlichen, die aufgrund ihrer Monopolstellung die Konsument*innen, den Staat und die Öffentlichkeit erpressen können, und die im Hinblick auf das Gemeinwohl erhalten bleiben müssen. Weiterhin sollen durch eine Reform nicht verstaatlichte Sektoren in Genossenschaftsverwaltung überführt werden. Ein demokratisches und soziales Europa implizierte für diese Vordenker die bedingungslose Absicherung aller Menschen und die anderen notwendigen Grundlagen, die für eine Gesellschaft nötig sind, "in dem tatsächlich alle Bürger am politischen Geschehen teilhaben können."

Erich Fromm, ein aus Europa, genauer aus Deutschland stammender Sozialphilosoph, propagierte Schritte zu einem demokratischen, humanistischen und ökologischen Sozialismus. Seiner Meinung nach sollte abgekehrt werden vom Versuch, Herrschaft über die Natur zu erlangen. Sondern es sollte die Herrschaft über die Technik und die irrationalen gesellschaftliche Kräfte und undemokratischen Institutionen angestrebt werden. Unbegrenztes Wirtschaftswachstums und eine Wirtschaft, die kranke Menschen erzeugt, seien abzuschaffen. Worauf es dabei ankommt, ist die demokratische Macht, die Richtung der Produktion zu bestimmen. Das heißt für Fromm auch, dass alle Gesellschaftsmitglieder in die Lage versetzt werden müssen, in Wirtschaft und Politik tatsächlich ihre aktive Mitbestimmung geltend machen zu können. Dazu gehöre in materieller Hinsicht auch, dass jedem Menschen ein Grundeinkommen zu garantieren ist, dies in Verbindung mit einer wesentlich verkürzten Arbeitszeit für alle. Das Recht der Aktionäre und Konzernleitungen, über die Produktion zu entscheiden, müsse drastisch eingeschränkt und Entscheidungsmacht der Verbraucher*innen gestärkt werden (vgl. Blaschke 2010: 279). Mit Erich Fromm können wir die Perspektive

auf ein anderes Europa erweitern - es ist ökologisch nachhaltig in Produktion und Lebensweise, es ist demokratisch, sozial. Das wäre ein ganz anderes Europa, als das, was wir heute haben - eine Europäische Union, die heute nach innen und nach außen asozial, unökologisch und demokratiefeindlich ist.

Europa, die Europäische Union demokratisch und sozial gerecht zu gestalten, ist auch das Anliegen des Bürger*innenmanifest für Europäische Demokratie, Solidarität und Gleichheit. Dieses Manifest wurde in drei Jahren mit über 60 Veranstaltungen mit Bürger*innen in ganz Europa erstellt und vor der Wahl zum Europäischen Parlament im Jahr 2014 den Abgeordneten vorgelegt. Es enthält sowohl Vorschläge für die Durchsetzung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z. B. durch vollständige Gesetzgebungsmöglichkeiten durch das Europäische Parlament und die Wahl der Abgeordneten auf transnationalen Listen), die Demokratisierung europäischer politischer Institutionen und die demokratische Erarbeitung einer neuen europäischen Konvention. Instrumente der direkten Demokratie sollen gestärkt werden (z. B. Bürgerinitiativen) und öffentliche Ausschreibungen auf allen regionalen Ebenen durch Bürger*innen mitbestimmt werden. Der Bankensektor soll strikt auf eine Gemeinwohlfunktion festgelegt werden. Im Manifest nahm einen breiten Raum auch die Umsetzung sozialer Grundrechte in ganz Europa und eines Grundeinkommens ein. Dieses Grundeinkommen soll allen Einwohner*innen in der EU zustehen. Wörtlich heißt es im Manifest: "The UBI, in enabling people to participate in [...] political processes by freeing time from the need to work to live or more and more often to survive [...], is a powerful instrument for democracy." (European Alternatives 2013) Ein Ziel des Grundeinkommens sei es, eine aktive und integrative Unionsbürger*innenschaft zu befördern.

Inzwischen hat sich infolge einer europäischen Bürger*inneninitiative zum Grundeinkommen auch das Netzwerk Unconditional Basic Income Europe (UBIE) gebildet, ein Zusammenschluss von Aktivist*innen aus fast allen europäischen Ländern. Ziel des Netzwerks ist die Einführung des Grundeinkommens mit den bekannten vier Kriterien in Europa und natürlich weltweit. Dieses Netzwerk ist vernetzt mit anderen internationalen sozialen Bewegungen, z. B. mit der wachstumskritischen Degrowth-Bewegung. Vor sechs Wochen fand in Deutschland die erste gemeinsame Konferenz statt, um Gemeinsamkeiten in politischen Zielen und bei politischen Interventionen zu diskutieren. Einige Gründungsmütter und -väter des Netzwerks UBIE haben durch politische Interventionen übrigens erreicht, dass das Europäische Parlament mit großer Mehrheit Prüfaufträge zum Grundeinkommen zur Bekämpfung von Armut und sozialer Ausgrenzung an die Europäische Kommission als auch an die EU- Mitgliedsstaaten beschlossen hat. Eingebracht in das Europäische Parlament wurden die diesen Beschlüssen zugrunde liegenden Berichte in einem Fall von einer Abgeordneten der Partei DIE LINKE aus Deutschland, im anderen Fall von einer Abgeordneten der Kommunistischen Partei Portugals. Diesen Prüfauftrag hat übrigens meine Partei in ihr Wahlprogramm zu den Wahlen zum Europäischen Parlament im Jahr 2014 aufgenommen.

Europa zu einem demokratischen und sozialen Gebilde zu machen, ist auch das Anliegen von 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5 (DiEM25). Autokratische, mächtige Lobbyist*innen und Institutionen hindern die Europäer*innen daran, eine demokratische Kontrolle und Bestimmung über ihre Währung, ihre Finanzen, ihre Wirtschaft und Arbeitsbedingungen und ihre Umwelt auszuüben. Dies muss geändert werden, die Entscheidungsmacht aus den Hinterzimmern der undemokratischen Institutionen vertrieben und die demokratische Einflussnahme und Kontrolle der Wirtschaft und Politik errungen werden. Diejenigen, die von Entscheidungen betroffen sind, müssen diese Entscheidungen auch mitbestimmen dürfen, so das Ziel der Bewegung. Yanis Varoufakis, der ehemalige griechische Finanzminister und Motor der DiEM25-Bewegung und viele andere haben dabei auch eine klare Haltung zum Grundeinkommen (vgl. Varoufakis 2016): Grundeinkommen hat die Aufgabe, den gesellschaftlichen Reichtum von oben nach unten umzuverteilen und somit die materielle Gestaltungsmacht der Bürger*innen zu verstärken. Dieses Grundeinkommen wäre meiner Meinung nach Ausdruck einer sozialen Unionsbürger*innenschaft, eine Art Demokratiepauschale, die die vorherrschenden repressiven und lückenhaften Almosensysteme in Europa abschafft (vgl. Kipping 2016).

In Europas linken bzw. sozialen Bewegungen sind also das Grundeinkommen und die notwendige Demokratisierung von politischen Institutionen und des Wirtschaftsund Finanzsektors von wesentlicher Bedeutung bei der Umsetzung der europäischen Idee und der Umgestaltung der Europäischen Union. In vielen linken Parteien und sozialen Bewegungen in Europa wurde in der Vergangenheit das Grundeinkommen diskutiert und programmatisch verankert (vgl. Blaschke 2012a und 2012b). In der LINKEN in Deutschland wird es kontrovers diskutiert. So gibt es leidenschaftliche Befürworterinnen wie mich und leidenschaftliche Kritiker.

Aktuell wird es in Finnland, in Tschechien, Italien, Spanien, Portugal u.a. Ländern in linken Parteien diskutiert, manche haben es bereits ins Parteiprogramm aufgenommen, z. B. Podemos, die finnische Linke Allianz oder die Kommunistische Partei Österreichs.

Kein Wunder: Denn das Grundeinkommen ermöglicht jedem Menschen, sich

bedingungslos materiell abgesichert und ökonomisch unerpressbar, somit aufrechten Ganges aktiv an der Gestaltung des Gemeinwesens einzubringen, in dem er lebt. Ein emanzipatorischer linker Ansatz - auch für die Gestaltung eines sozialen und demokratischen Europas! Die Zukunft der europäischen Linken ist also damit verbunden, die Herausforderung, die die Idee eines sozialen und demokratischen Europas heute an uns stellt, anzunehmen, und Wege dahin in einem breiten demokratischen Diskurs politisch mehrheitsfähig zu machen. Aus meiner Sicht und der Sicht vieler Linker in Europa gehört das Grundeinkommen dazu.

3. Die ökologische Frage und Grundeinkommen

Die ökologische Frage und die soziale Frage kann heute nicht mehr getrennt diskutiert werden. Weniger Verbrauch von Naturressourcen, Stopp der Umweltzerstörung und -verschmutzung – alles das setzt eine andere Produktions- und Lebensweise voraus. Die profitorientierte Produktions- und Investitionslogik muss einer demokratischen Organisation der Wirtschaft weichen, die den Bedürfnissen der Menschen und dem Gemeinwohl verpflichtet ist. Der gesellschaftliche Nutzen und die Verträglichkeit mit den Erfordernissen von Nachhaltigkeit und Schonung natürlicher Ressourcen unseres Lebens müssen im Mittelpunkt der Produktion stehen. Dazu sind umfangreiche Veränderungen in der Produktion und in der Lebensweise der Menschen nötig. Diese können erstens nur demokratisch erreicht werden - womit wieder das Grundeinkommen ins Spiel käme, will man ernsthaft alle an der demokratischen Verhandlung beteiligen. Zweitens ist das Grundeinkommen aber auch nötig, um den dringenden Umbau und zum Teil auch Abbau der Produktion angstfrei zu vollziehen. Wer existenziell auf einen unökologischen, Naturressourcen exzessiv vernutzenden Arbeitsplatz angewiesen ist, um nicht zu verarmen oder in repressive Sozialsysteme zu fallen, der ist kein Freund einer ökologischen Transformation. Jede/ r muss also sicher sein: Meine grundlegende Existenz und Teilhabe ist gesichert bedingungslos. Außerdem befördert eine Grundeinkommen Arbeitszeitverkürzung und Zeitsouveränität sowie den Aufbau von solidarischen Ökonomien - aus linker und wachstumskritischer Sicht unabdingbare Transformationsprojekte. Grundeinkommensbewegung und Degrowthbewegung treffen sich bezüglich dieser Bedeutungen von sozialer Sicherheit, Demokratie, Arbeitszeitverkürzung und Zeitsouveränität sowie solidarischer Ökonomien (vgl. Conference UBI - Degrowth 2016). Die europäische Linke als Bewegung und als Partei kann und muss auch diese Herausforderung annehmen, um den starken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Machtblock Europa sozialökologisch zu transformieren.

Meine Damen und Herren, liebe Mitstreitende, für soziale Bewegungen und für linke Parteien ist das Grundeinkommen ein wesentlicher Bestandteil einer sozialökologischen Transformation der Gesellschaft. Für die europäische Linke und ich glaube, auch für die Linke weltweit.

Herzlichen Dank für Ihre Aufmerksamkeit!

Literatur und Quellen:

- Blaschke, Ronald (2010), Denk' mal Grundeinkommen! Geschichte, Fragen und Antworten einer Idee. In: Blaschke, Ronald/Otto, Adeline/Schepers, Norbert: Grundeinkommen. Geschichte – Modelle – Debatten, Berlin, S. 9-292
- Blaschke, Ronald (2012a), Von der Idee des Grundeinkommens zur politischen Bewegung in Europa – Entwicklung und Fragen. In: Ronald Blaschke/Adeline Otto/Norbert Schepers (Hg.), Grundeinkommen. Von der Idee zu einer europäischen politischen Bewegung. Mit einem Vorwort von Katja Kipping, Berlin, S. 17-62
- Blaschke, Ronald (2012b), From the idea of a Basic Income to the political movement in Europe, Berlin; https://www.rosalux.de/fileadmin/rls_uploads/ pdfs/rls_papers/Papers_Basic-Income_Blaschke-2012pdf.pdf
- Conference UBI Degrowth (2016), Themes of conference; https://ubi-degrowth. eu/en/themes
- European Alternatives (2013), Citizens Pact for European Democracy; https://citizenspact.eu/citizens-manifesto/english/

- · European Parliament (2008), Report on promoting social inclusion and combating poverty, including child poverty, in the EU; http://www.europarl. 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REPORT+A6-2008-0364+0+DOC+XML+V0//EN
- European Parliament (2010), Role of minimum income in combating poverty and promoting an inclusive society in Europe; http://www.europarl.europa.eu/ sides/getDoc.do?type=TA&language=EN&reference=P7-TA-2010-375
- Kipping, Katja (2016), Ein neues Europa entsteht von unten, Rede bei DiEM 25 am 09.02.2016; http://linksfraktion.de/reden/neues-europa-entstehtunten-2016-02-09/
- Marx, Karl (1983), Das Kapital, Band III. In: Karl Marx/Friedrich Engels: Werke, Band 25, Berlin.
- · Marx, Karl/Engels, Friedrich (1972):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in: Karl Marx/Friedrich Engels: Werke. Band 4, Berlin, S. 459-493.
- · Spinelli, Altiero/Rossi, Ernesto/Colorni, Eugenio (1941), Manifest von Ventotene; http://www.europarl.europa.eu/brussels/website/media/Basis/Geschichte/ bis1950/Pdf/Manifest_Ventotene.pdf
- · Varoufakis, Yanis (2016), Schweiz ist ideal für Experimente mit dem Grundeinkommen. Der frühere griechische Finanzminister Giannis Varoufakis wirbt für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http://www.tagesanzeiger. ch/schweiz/standard/die-schweiz-ist-ideal-fuer-experimente-mit-demgrundeinkommen/story/23669824

민주주의 일반으로서의 기본소득. 만인의 사회적 자유와 경제적 권력의 보장

(Grundeinkommen als Demokratiepauschale.

Absicherung sozialer Freiheit und ökonomischer Macht aller Menschen)

카티야 키핑(Katja Kipping)

〈목차〉

- 1. 사회적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소득에 대한 급진민주주의적 접근들
- 2. 만인을 위한 경제권력 기본소득과 민주적 제도들
- 3. 마치는 말 사회경제적 전환을 위하여

1. 사회적 자유와 민주주의 - 기본소득에 대한 급진민주주의적 접근들

기본소득에 대한 급진민주주의적 접근들은 사람의 상호유대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상호의존성에 주목한다. 공동체는 공적이며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해된다. 공동체의 지향점은 모든 구성원 복지이며, 또한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자유는 침해나 개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지배로부터 만인의 독립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유는 타인 또는 국가 제도로부터의 자의적인 침해나 개입, 또는 그러한 침해나 개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한다. 여기에서 자의란 개입하는 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하여 자유란, 공동체적이면서도 개별적으로 형성되고 개입가능성들과 제

도들을 통제하는 자기지배의 형태 속에서만 비로소 충족된다. 이처럼 상호주관적이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바라본 개별적인 자유는 '사회적 자유'라고 정의되다. 집단적이며 숙 의적인 (숙고하면서 결정하는) 민주적 자기결정의 의미에서 만인이 '공동의 일'res publica, ^{공화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와 같은 참여는 당연히 사회적 평등을 전제한다. 사회적 평등은 사회적 자유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의한 지배와 예속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과 제도는 공공복리 와 자기지배를 반영하며, 촉진하고,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참조: 2009년 한국의 사 회당 강령, Patry 2010, Cassasas/De Wispelaere 2012, Cassasas/De Wispelaere 2015)

공화주의와 '사회적 자유'의 이와 같은 근본적 특징들로부터 기본소득을 '민주주의 일 반'Demokratiepauschale 으로 입론하기 위한 여섯 테제를 끌어낼 수 있다.

1) 기본소득은 해당 정치공동체에서 화폐형태로 필요한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 는 삶을 보장하며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삶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삶과 참여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화폐적 형태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형태도 가능하 다는 점도 여기에서 밝혀둔다 – 즉 공공재.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개방된 접근 권. 화폐적 형태와 비화폐적 형태는 상호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한다. 두 가지 형태는 첫째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둘째로 시민자격 에 경제적인 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이 사회를 만들고 바꾸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참여의 자유롭고 평등한 조건에 대한 충분한 물질적 보장 없이 는 민주적 참여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 형식적인 참여가능성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물질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첫째, 정치적 참여로부터 배제되며, 둘째, 정 치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상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로부터 당연하게 주목해야 할 점은 — 공공복지의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점, 곧 (제도로서)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내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높은 생산력과 많은 잉여가 있는 이 시대에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는 오직 경제적 특권과 정 치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만 문제인 것이다. 모든 이를 위해 필요한 만큼 이 미 충분히 있다 -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2) 급진민주주의적 전망에서는 단 한 번의 지급. 예컨대 출발자본으로서 지급하는 것보 다는 정기적으로 확보되는 기본소득이 선호된다. 왜냐하면 평생에 걸쳐 소득을 보장함 으로써만 이에 상응하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는 국가시민권에 대한 현대적 이해방식과 연관된다.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권리 및 기회와 관련하여 다수의 시민과 소수의 이주자를 구분하 는 것은 공동체 분열의 문제를 낳을 것이며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로 이어질 것이다.
- 4) 급진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정치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지 국가에 의존하는 복지수급 그룹의 일원으로서 받는 것은 아니다. 개별 인구집단을 선별하는 과정과 결부된 낙인성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지배관계의 원천이 된다. 이는 삶을 보장하지 못하며 사회적 참여에도 불충분한 액수의 현금이전인 부분적 기본소득을 충분한 지급수준에 도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필요성을 심사하고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는 사회부조로 대체해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매우 명백한 점은 복지관청에서 낙인찍힌 민원인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여긴다는 것이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에 따르자면, 기본소득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은 공화국의 없어서는 안 되는 전제조건conditio sine qua non 이다. 공화국은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 삶에 대한 염려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연합 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 삶을 보장하며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소득은 시민권의 원칙을 공고하게 만든다. 시민권의 원칙은 필요를 심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구별하며 탈락시키는 진입테스트에 복속될 수 없다. (참조: Bauman 2000)

그래서 다섯 번째 테제가 타당하게 된다. 5) 모든 시민은 오직 충분한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권에 의해서만 서로를 시민으로서 완전하게 인정하게 된다. 이는 부유한 시민이 덜부유한 시민보다 기본소득 재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는 점을 뜻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자원과 경제권력의 재분배와 화급분배Rückverteilung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6) 기본소득은 어떠한 대가와도 연관되지 않는다. 사회적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무는 자칫하면 자의적 침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새로운 지배관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엇이 사회적으로 인정될만한 업적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매우 넓은 관료적 재량영역을 열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에 관한 시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시민적 의무가 내용으로 포함된다면, 자유로운 참여를 규칙과 틀이 정해진 참여

에 대한 강제로 탈바꿈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나는 이 장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독일 정치가의 의미심장한 위트로 마감하려 한다. "의워들이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급료에 의해 그들의 내용적인 독립성을 보전하 고 그들 자신이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 워들 대다수는 그와 같은 독립성과 억압할 수 없음을 주권자. 곧 주민들에게 보장하 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한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Spehr 2003, 105) 나는 의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그래서 나는 몇 년 전에 의원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경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비'Diäten라는 개념에 빗대어 '가벼운 세비'Diäten light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참조 Kipping 2009) 삶을 보장하며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보장은 공공재와 사회적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무상 접근권의 보편적 보장의 여러 형태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자유와 민주적 정치적 앙가주망과 실제적인 협상력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기본소득, 그것은 민주주의 일반이다!

2. 만인을 위한 경제권력 - 기본소득과 민주적 제도들

만약 누군가 A를 말했다면 그는 B도 말해야 한다. 사람들이 협상력을 가지고 공적인 일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사람은 경제를 공적이며 정치 적으로 구성하는 토대. 곧 정치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의 토대를 요구해야만 한다 (참조 Casassas/De Wispelaere 2012 und 2015) 그러한 토대는 한편으로는 기본소득 보장 이나 공공복지의 다른 형태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한 토대는 하지만 다른 관 점에서도 필수적인데, 경제권력의 자의적 개입, 즉 생존의 위협, 건강의 위험, 자연 자 원의 파괴를 통한 자의적 개입은 용납될 수 없다. 공적인 형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제. 즉 사유화된 경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민주적 영향범위에서 벗어난 기구들에 내맡겨진 경제와 금융부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적인 영역을 빼앗아서 사유화함으로써 경제적 형성권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일은 어떤 형 태로 이루어지든지 현실의 정치적 사회적 역관계에 깊숙이 개입한다. 그러한 일은 정치 적인 것을 탈취하며 시민들에게 공적 현안에 대한 형성과 통제의 현실적 가능성을 빼앗 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득, 자산, 투자기회 등의 분배에 의하여 배분적으로 성립되는 경제권력에 관련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와 금융을 형성하며 통제하는 공적이며 정치적인 영역에 관련된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자. 실제로 누가 자연자원과 생산수단의 투입을 결정하며, 실제로 누가 투자와 경제적 행위들의 조정 방식을 결정하는가? 오늘날 누가 불평등하게 분배된 형성가능성과 통제가능성에 의하여 인간에 대한 타율지배를 행사하며 경제와 사회를 소수의 자의에 내맡기고 있는가?

인간의 사회적 자유는 기본소득이나 모든 사람의 삶과 참여를 보장하는 다른 형태들 이외에도 시민의 자기지배를 요구한다. 공동체적 통제 및 개별적 통제와 이에 상응하는 개입기회들에 의하여 시민의 자기지배가 실현되며, 이는 오직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제도들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적 삶을 함께 형성할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한다. (참조 Cassasas/De Wispelaere 2015)

만인을 위한 경제적 권력의 내용에는 기본소득, 삶과 참여의 무조건적 보장의 다른 형태들, 여기에 덧붙여 경제와 사회에 대한 공적 정치적 형성가능성의 제도적 보장이 들어간다. 이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의 민주적 사회경제적 전환은 그만큼 더필수적이며 긴급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개인 강연에서 전망으로서 다룰 예정인데, 거기에서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유럽 좌파에게 어떠한 과제들을 가져다주었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3. 마치는 말 - 사회경제적 전환을 위하여

빈곤과 배제, 다수에 대한 소수의 권력과 인간적 삶의 자연적 기초의 파괴, 이것이 현 상황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탈성장Degrowth 운동, 자연자원의 소비를 유의미하게 축소하고 우리들의 행성에 대한 경제적 목적의 파괴와 위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운동은 생태주의와 민주주의와 모든 사람의 사회적 안전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이러한 목표와 함께 여러 사회적 운동들과 정치적 행위자들이 공조하여 나아갈 수 있도

록 애쓰고 있다. (참조 Blaschke 2016)

내게는, 오직 이와 같은 복합적인 시야를 통해서만, 또한 사회운동들 상호간의 서로 촉 진하는 연관관계에 의해서만, 21세기의 도전과제들을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보장하며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본소득은 사회 경제적 전환이 민주적 전환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 참고자료-

- · Bauman, Zygmunt (2000), Die Krise der Politik. Fluch und Chance einer neuen Öffentlichkeit, Hamburg.
- Blaschke, Ronald (2016), Grundeinkommen und Degrowth Wie passt das zusammen? http://www.degrowth.de/de/2016/02/grundeinkommen-unddegrowth-wie-passt-das-zusammen/
- · Casassas, David/De Wispelaere, Jurgen (2012), The Alaska Model: A Republican Perspective. In: Karl Widerquist/Michael W. Howard (Ed.): 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Examining its Suitability as a Model, New York, 169-188.
- · Casassas, David/De Wispelaere, Jurgen (2015), Republicanism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September, 1-18.
- Kipping, Katja (2009), Ausverkauf der Politik. Für einen demokratischen Aufbruch, Berlin.
- Patry, Eric (2010),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in der Schweiz. Eine republikanische Perspektive, Bern, Stuttgart, Wien.
- · Sozialistische Partei Südkorea,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und

allgemeine Sozialfürsorge, Parteiprogramm, Ergänzung Nr. 1, 2009 (Übersetzung von Socialist Party, South Korea, Basic Income for All an Universal Welfare, Übersetzung: Min Geum; https://www.grundeinkommen.de/content/ uploads/2010/08/10-05-22-bge-programm-socialist-party-korea-endrb.pdf

· Spehr, Christoph (2003), Gleicher als andere. Eine Grundlegung der freien Kooperation, in: Christoph Spehr (Hg.), Gleicher als andere. Eine Grundlegung der freien Kooperation, Berlin, S. 19-115.

(번역: 금민)

Grundeinkommen als Demokratiepauschale.

Absicherung sozialer Freiheit und ökonomischer Macht aller Menschen

Katja Kipping

Inhalt

- 1. Soziale Freiheit und Demokratie radikaldemokratische Zugänge zum Grundeinkommen
- 2. Ökonomische Macht für alle Grundeinkommen und demokratische Institutionen
- 3. Abschließende Bemerkung zur sozialökologischen Transformation

1. Soziale Freiheit und Demokratie - radikaldemokratische Zugänge zum Grundeinkommen

Radikaldemokratische Zugänge zum Grundeinkommen schenken zwischenmenschlichen Bindungen und wechselseitigen Abhängigkeiten der Mitglieder eines Gemeinwesens große Beachtung. Das Gemeinwesen wird als öffentliche, politische Angelegenheit verstanden. Es ist auf das Wohl aller orientiert und soll von allen gestaltet werden. Daraus folgt, dass Freiheit sich nicht im Sinne von Abwesenheit von Eingriffen, von Einmischungen versteht, sondern im Sinne von Unabhängigkeit aller gegenüber einer Fremdherrschaft. Freiheit meint in diesem Sinne, keinen willkürlichen Eingriffen und Einmischungen anderer bzw. staatlicher Institutionen oder Möglichkeiten solcher Eingriffe und Einmischungen ausgesetzt zu sein. Willkür bedeutet hier, dass die Einmischung im Belieben der Einmischenden steht. Freiheit dagegen erfüllt sich also erst in Form einer Selbstherrschaft durch gemeinschaftliche und individuelle Gestaltung und Kontrolle der Eingriffsmöglichkeiten und Institutionen. Individuelle Freiheit, die in einem solchen intersubjektiven, politischen Kontext betrachtet wird, wird auch als soziale Freiheit definiert. Die aktive Partizipation aller an der res publica im Sinne einer kollektiv-deliberativen (überlegend beschließenden), demokratischen Selbstbestimmung ist oberster Wert. Das setzt natürlich die soziale Gleichstellung zur Sicherung der sozialen Freiheit voraus, die eine Herrschaft und Abhängigkeit aus ökonomischen Gründen verhindert. Ebenso, dass Gesetze und Institutionen das Gemeinwohl und die Selbstherrschaft widerspiegeln, befördern, ermöglichen (vgl. Sozialistische Partei Südkorea 2009, Patry 2010, Cassasas/De Wispelaere 2012, Cassasas/De Wispelaere 2015).

Aus diesen Grundzügen des Republikanismus und sozialer Freiheit kann man folgende sechs Thesen zur Begründungen eines Grundeinkommens als Demokratiepauschale ableiten:

1. Das Grundeinkommen muss das absichern, was im jeweiligen politischen Gemeinwesen in Geldform nötig ist, damit die Existenz gesichert und gesellschaftliche Teilhabe, auch die Teilhabe am politischen Leben, ermöglicht wird. Damit ist auch gesagt, dass neben monetären Formen der bedingungslosen Absicherung der Existenz und Teilhabe auch nicht monetäre Formen möglich sind: freier Zugang zu öffentlichen Gütern, zu öffentlicher Infrastruktur und Dienstleistungen. Beide Formen schließen sich nicht aus, sondern ergänzen sich. Beide Formen sollen den Menschen erstens die weitgehende sozioökonomische Unabhängigkeit und zweitens ihren Bürger*innenstatus mit einer ökonomischen Verhandlungsmacht absichern, auf deren Basis sie sich in die Gesellschaftsgestaltung einbringen können. Ohne die ausreichende die materielle Absicherung freier und gleicher Bedingungen der gesellschaftlichen Teilhabe ist keine demokratische Teilhabe möglich – formale Teilhabemöglichkeiten reichen nicht aus. Wer nicht genug materielle Ressourcen hat, ist erstens von politischer Partizipation ausgeschlossen und hat zweitens keine ausreichende Verhandlungsmacht in politischen Prozessen. Dabei ist natürlich zu beachten, dass das Grundeinkommen,

wie alle anderen Bereiche der Daseinsvorsorge für alle, langfristig Bestand haben muss, also abgesichert werden muss. Aus meiner Sicht ist dies in einer Zeit der hohen Produktivität und des Überflusses kein Problem. Es ist bestenfalls ein Problem für diejenigen, die ökonomischen Privilegien und politische Macht nicht abgeben möchten. Es ist genug für alle da - weltweit!

- 2. Aus der radikaldemokratischen Perspektive ist das regelmäßig gewährte Grundeinkommen gegenüber einmaligen Auszahlungen, z. B. als Startkapital, vorzuziehen, da nur so ein lebenslanges garantiertes Einkommen und entsprechende Teilhabe garantiert werden kann.
- 3. Das Recht auf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ist mit einem modernen Verständnis von Staatsbürgerschaft zu verbinden. Eine Unterscheidung zwischen einer Mehrheit von Staatsbürger*innen und einer Minderheit von Zugewanderten in Bezug auf elementare sozioökonomische Rechte und Möglichkeiten würde zu einer problematischen Spaltung des Gemeinwesens und einer Herrschaft einer Mehrheit über eine Minderheit führen.
- 4. Aus radikaldemokratischer Sicht erhalten die Menschen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als gleichberechtigte Mitglieder des politischen Gemeinwesens, nicht als Teil einer bedürftigen Gruppe, die vom Staat abhängt. Die mit der Besonderung verbundene Stigmatisierung einzelner Bevölkerungsgruppen spaltet das Gemeinwesen und ist Quelle von Herrschaftsverhältnissen. Das gilt auch, wenn partielle Grundeinkommen, also Transferleistungen, die nicht die Existenz sichern und gesellschaftliche Teilhabe ermöglichen, durch bedürftigkeitsgeprüfte, einkommens- und vermögensgeprüfte Sozialleistungen ergänzt werden müssen, um eine ausreichende Höhe zu erreichen.

Es ist klar, dass ein Mensch, der sich auf dem Sozialamt zum stigmatisierten Bittsteller machen muss, es bedeutend schwerer hat, sich aufrechten Ganges in die politische Gestaltung des Gemeinwesens einzubringen. Oder wie es Zygmunt Bauman formulierte: Das entscheidende Argument zugunsten des Grundeinkommen ist, daß es die conditio sine qua non einer Republik darstellt, wie es sie nur im Verbund von Menschen mit Selbstvertrauen geben kann, von Menschen ohne Existenzangst. Ein Grundeinkommen, welches tatsächlich die Existenz sichert und gesellschaftliche Teilhabe ermöglicht, würde ein Prinzip von Bürger*innenrechten etablieren, das nicht einem trennenden und disqualifizierenden 'Zugangstest' durch Bedürftigkeitsprüfungen unterworfen ist (vgl. Bauman 2000).

Daher gilt 5.: Alle Bürger*innen werden erst durch das Bürger*innenrecht auf ein ausreichendes Grundeinkommen, dass sie sich wechselseitig zugestehen, als solche vollwertig anerkannt. Das bedeutet aber auch, dass wohlhabendere Bürger*innen vergleichsweise mehr zur Finanzierung des Grundeinkommens beitragen als die weniger wohlhabenden Bürger. Damit wird die Frage der Rück- und Umverteilung von ökonomischen Ressourcen und ökonomischer Macht gestellt.

6. Das Grundeinkommen an keine Gegenleistung gebunden. Auch eine Pflicht zur gesellschaftlichen, politischen Partizipation wäre Quelle neuer Herrschaftsverhältnisse, die willkürliche Eingriffe ermöglichen würden. Denn die Frage, was eine gesellschaftlich anerkennungswürdige Leistung ausmacht und was nicht, lässt erheblichen bürokratischen Ermessenspielraum offen. Das Bürger*innenrecht auf ein Grundeinkommen, das eine direkte Bürger*innenpflicht beinhaltet, würde außerdem freiwilliges Engagement in reglementierten Teilhabezwang umwandeln.

Ich möchte diesen Abschnitt mit einem Bonmot eines deutschen Grundeinkommensbefürworters und Politikers abschließen: Zitat Beginn - "Es ist von erheblicher Komik, dass Abgeordnete für sich in Anspruch nehmen, durch relativ hohe Gehälter ihre inhaltliche Unabhängigkeit zu wahren und sich nicht-erpressbar zu machen – dass die meisten dieser Abgeordneten es aber nicht für nötig halten, eine derartige Unabhängigkeit und Nicht-Erpressbarkeit auch für den Souverän, nämlich die Bevölkerung, zu gewährleisten." - Zitat Ende (Spehr 2003, 105) Ich meine: Was für Abgeordnete gilt, sollte für alle Menschen gelten. Daher habe ich vor Jahren in Anlehnung an den Begriff "Diäten", der für die ökonomische Absicherung von politischer Unabhängigkeit der Abgeordneten steht, den Begriff "Diäten light" geprägt (vgl. Kipping 2009). Die individuelle Garantie eines die Existenz sichernden und Teilhabe ermöglichenden Grundeinkommens ist neben anderen Formen der universellen Absicherung von Menschen (z. B. in Form gebührenfreier Zugänge zu öffentlichen Gütern, sozialer Infrastruktur und sozialen Dienstleistungen) unabdingbare Voraussetzung sozialer Freiheit, demokratischen, politischen Engagements und tatsächlicher Verhandlungsmacht aller Menschen. Es ist eine Demokratiepauschale!

2. Ökonomische Macht für alle – Grundeinkommen und demokratische Institutionen

Wer A sagt, muss auch B sagen. Oder: Wer Grundeinkommen fordert, damit sich die Menschen in das Öffentliche mit Verhandlungsmacht einbringen können, muss auch die Grundlagen des Politischen und des Alltäglichen, die Wirtschaft öffentlichpolitisch gestaltbar machen (vgl. Casassas/De Wispelaere 2012 und 2015). Das ist einerseits schon für die Absicherung des Grundeinkommens und anderer Formen der öffentlichen Daseinsvorsorge notwendig. Das ist aber erst recht auch aus anderer Sicht notwendig: Willkürliche Einmischungen in menschliche Angelegenheiten durch Wirtschaftsmacht, erst recht durch die Gefährdung von existenziellem (Über)Leben und von Gesundheit der Menschen oder auch von natürlichen Ressourcen ist nicht akzeptabel. Eine Wirtschaft, die der öffentlichen Gestaltung entzogen, also privatisiert ist, ist inakzeptabel. Das heißt auch, eine Wirtschaft und ein Finanzsektor, die nicht demokratisch kontrollierbaren und beeinflussbaren Institutionen ausgeliefert sind, sind ebenfalls inakzeptabel. Eine Ungleichverteilung der Gestaltungsmacht durch Beraubung des Öffentlichen (Privatisierung) in der einen oder anderen Form greift tief in reale politische und soziale Kräfteverhältnisse ein, entzieht dem Politischen und damit den Bürger*innen reale Möglichkeiten der Gestaltung und Kontrolle öffentlicher Angelegenheiten. Gemeint ist damit einerseits die distributiv entstehende wirtschaftliche Macht – durch verteilte Einkommen, Vermögen und Investitionsmöglichkeiten. Genauso gemeint ist aber der öffentlich-politische Bereich der Gestaltung und Kontrolle der Wirtschaft und des Finanzsektors. Wer bestimmt tatsächlich über den Einsatz von Naturressourcen, von Produktionsmitteln, über Investitionen und die Art und Weise von Besteuerungen wirtschaftlicher Aktivitäten, um nur einiges zu nennen? Wer übt heute mit realen ungleich verteilten Gestaltungs- und Kontrollmöglichkeiten Fremdherrschaft über die Menschen aus und setzt Gesellschaft und Wirtschaft der Willkür einer Minderheit aus?

Die soziale Freiheit der Menschen erfordert neben dem Grundeinkommen und anderen Formen der Existenz und Teilhabesicherung aller Menschen die Selbstherrschaft der Bürger*innen: durch gemeinschaftliche und individuelle Kontrolle und entsprechende Eingriffsmöglichkeiten, die durch entsprechend demokratische Institutionen abgesichert sind. Diese Institutionen müssen allen Menschen die Möglichkeit geben, individuell und kollektiv das soziale und ökonomische Leben mitzugestalten (vgl. Cassasas/De Wispelaere 2015).

Ökonomische Macht für alle heißt also Grundeinkommen inkl. anderer Formen der bedingungslosen Existenz und Teilhabesicherung für alle und institutionell abgesicherte öffentlich-politische Gestaltbarkeit d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durch alle. Dies umso mehr, desto notwendiger und dringender eine demokratische sozialökologische

Transformation der Gesellschaft ist. Morgen, und das als Ausblick, werde ich auf einer weiteren Veranstaltung darüber sprechen, welche Herausforderung dies für die europäische Linke mit sich bringt.

3. Abschließende Bemerkung zur sozialökologischen Transformation

Armut und Ausgrenzung, Macht weniger über viele und Zerstörung der natürlichen Grundlagen menschlichen Lebens – das ist die Situation.

Die internationale Degrowth-Bewegung, die sich für eine Welt mit bedeutend weniger Naturressourcenverbrauch und wirksamer Zurückdrängung ökologischer Zerstörung und Schädigung unseres Planeten einsetzt, streitet daher für das Zusammendenken von Ökologie, Demokratie und sozialer Sicherheit aller Menschen, und damit für das Zusammengehen der verschiedenen sozialen Bewegungen und politischen Akteure (vgl. Blaschke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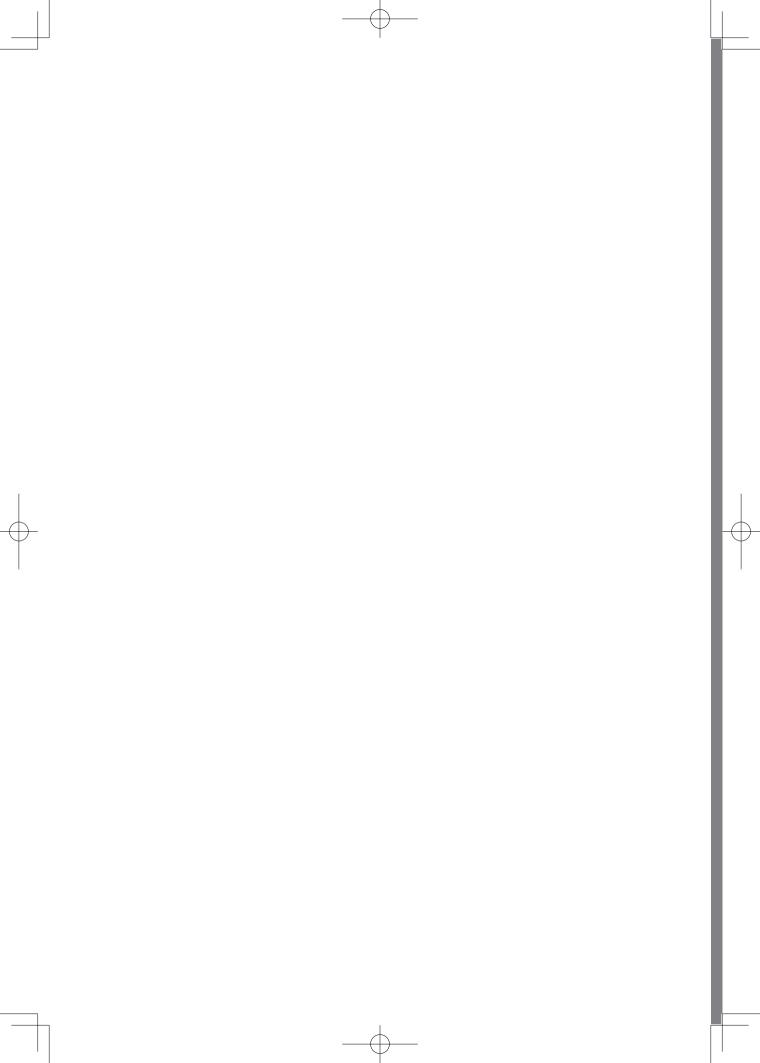
Mir scheint, dass nur noch mit dieser komplexen Sichtweise und dem sich befördernden Bezug der sozialen Bewegungen aufeinander den Herausforderungen des 21. Jahrhunderts zu begegnen ist. Das Grundeinkommen, das tatsächlich die Existenz sichert und die gesellschaftliche Teilhabe ermöglicht, ist dabei ein wichtiger Bestandteil einer sozialökologischen Transformation, die eine demokratische Transformation sein will!

Literatur:

- Bauman, Zygmunt (2000), Die Krise der Politik. Fluch und Chance einer neuen Öffentlichkeit, Hamburg.
- Blaschke, Ronald (2016), Grundeinkommen und Degrowth Wie passt das zusammen? http://www.degrowth.de/de/2016/02/grundeinkommen-und-

degrowth-wie-passt-das-zusammen/

- ° Casassas, David/De Wispelaere, Jurgen (2012), The Alaska Model: A Republican Perspective. In: Karl Widerquist/Michael W. Howard (Ed.): 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Examining its Suitability as a Model, New York, 169-188.
- · Casassas, David/De Wispelaere, Jurgen (2015), Republicanism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September, 1-18.
- · Kipping, Katja (2009), Ausverkauf der Politik. Für einen demokratischen Aufbruch, Berlin.
- Patry, Eric (2010),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in der Schweiz. Eine republikanische Perspektive, Bern, Stuttgart, Wien.
- · Sozialistische Partei Südkorea,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und allgemeine Sozialfürsorge, Parteiprogramm, Ergänzung Nr. 1, 2009 (Übersetzung von Socialist Party, South Korea, Basic Income for All an Universal Welfare, Übersetzung: Min Geum; https://www.grundeinkommen.de/content/ uploads/2010/08/10-05-22-bge-programm-socialist-party-korea-endrb.pdf
- Spehr, Christoph (2003), Gleicher als andere. Eine Grundlegung der freien Kooperation, in: Christoph Spehr (Hg.), Gleicher als andere. Eine Grundlegung der freien Kooperation, Berlin, S. 19-115.



II.

기본소득 모델의 다채로운 세계?

- 진정한 의미의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신자유주의적 변형태에 관하여

가브리엘레 슈미트(Gabriele Schmidt) (브레멘주 기초의원, 좌파당 '기본소득 활동그룹' 대변인)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브레멘에서는 한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노인과 청소년,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과 운이 좋아 특혜를 받는 사람들 사이를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동의가 있었다. 예술에서 구매자들의 메세나Mecenat 운동과 사회적 차원은 매우 중요했다. 그럼에도 오늘날 브레멘은 늘어나기만 하는 백만장자들의 숫자와 높은 실업률과임금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또한 이곳에서도 고도로 발전한 산업국가들에서 과도한 환경파괴적인 생산과 재화이동을 통하여 우리가 초래한 기후변화가 감지된다. 신자유주의 정책부터 신보수주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 세기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인 사회적 문제와 생태적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정책들은 사회적 대립을 더 격화시키며 성장 강박을 더 높일 뿐이다.

브레덴 주의 기초의회에서 나는 좌파당을 대표하여 정책을 입안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작은 범위의 정책은 큰 범위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적극적 활동을 한다. 하나의 예는 좌파당의 '기본소득활동그룹'BAG Grundeinkommen 의 대변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해방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삶을 보장하며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해방적 기본소득은 경제적 부를 사회경제적이며 민주적인 의미에서 재분배하라는 요구이며, 바로 그렇기에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5월 말에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탈성장 유동이 유럽 차원에서는

최초로 만나는 회합이 가졌다. 두 운동은 각각 다른 주제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얻었으며, 두 운동의 겹치는 부분을 끄집어내는 일을 시작했으며, 협력가능성을 측정했다. 탈성장degrowth/Postwachstum은 모든 사람의 복지와 삶의 생태적 기초의 보전을 목표로하는 것이며 앞으로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준칙이 되어야 한다.

탈성장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으려면 존중과 협력이 우리들의 행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다수 사람들의 복리 또는 사회적 정의는 탈성장 사회라는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일까? 왜 생태적으로 나무랄 데 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일까? 독일의 저임금노동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발도상국에서 생태적으로 문제 많은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성장의 덫으로부터 결국 빠져 나올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KIK 티셔츠는 방글라데시에서 기아임금과 비인간적 노동조건 하에서 생산된다. 부유한 산업국가의 저소득층은 가난한 나라들의 저임금 빈곤층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으며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만이 생태적으로 탓할 데 없는 생활양식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연환경을 모조리팔아먹으려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임금노동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쟁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생계노동 없이는 소득도 없다는 것은 빈곤 속에서의 삶을 의미하며, 사회적 안전망도 없는 나라에서는 그 이하의 삶을 뜻한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에게 소비와 제품선택에 필요한 정도의 화폐를 기본소득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일까? 이는 물론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배제를 만들어내며, 인간과 자연을 계속 착취해야만 하는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게다가 이번에는 양심에 거리낄 일도 없이 부자들은 더 높은 수준에서 소비할 수 있다. 생계노동과 생산물에 대한 선택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기본소득의 경우처럼 임금과 소득이 분리될 때에만 비로소 주어질 것이다. 생존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이 그 지급수준에서 삶에 필수적인 것과 사회적 참여에 충분한 수준이 되지 못할 경우, 생계를 위해 우리는 인륜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서 (예컨대 공장식 축산업이나 핵발전소 등에서)원치 않는 노동을 해야만 하는 강제에 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구 대다수는 삶의 보장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활동의 선택에

서의 자유, 즉 지불되는 활동이든 지불되지 않는 활동이든 활동의 종류와 상관없는 자유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활동의 시간적 배분에서의 자유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좌파당 '기본소득 활동그룹'이 독일의 여러 노조들과 협력하여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략 40%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그들의 생계노동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취미를 위해줄이겠다고 대답했다. (기본소득에 의해 열리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자유공간은 생존에 대한 염려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하며 그러한 삶의 영역과 조건들도 스스로 정하는 더 많은 참여를 촉진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실현가능성. 수용가능성 및 노동법적 보호

좀 더 용기를 내어 더 많은 요구를 제기한다면 더 많은 희망들이 실현될 것이다 — 일자리 바꾸기, 노동시간단축, 개인기업의 설립, 부모나 파트너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등등.

국가적 과제는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 시민보험에 의한 사회법적 노동법적 보호이다. '기본소득 활동그룹'은 개인의 결정을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빈곤선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역과 부문을 모두 망라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국가는 임금보조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높은 최저임금의 기초 위에서만 노동조합이 적절한 임금을 관철하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건강과 시간주권에도 역작용을 하는데, 노동시간단축은 이를 방지할 것이다. 의미있는 일자리 나누기도 장시간 노동에 의하여 어려워진다. 기본소득은 아무런 창조성 없이 기술적인 틀로 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포괄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모든 시민을 포괄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 활동그룹'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돌봄보험을 단일한 시민보험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사회국가적 과제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방적 기본소득의 재정

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우선 오늘날 전 세계적 생산과 서비스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좋은 삶의 가능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단지 막대한 부가 극

도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 뿐이다. '기본소득 활동그룹'의 모델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해방적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상위 1/3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기본소득의 재정 마련에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부터 얻는이득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매월 7.000 유로의 총소득, 한국원화로 계산하면 매월 1,050 만원의 총소득을 얻는다. 또한 생산하는 것이라고는 전혀없는 금융업도 재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자연자원에 대한 과세를 올리고 환경부담금도 올려야 할 것이다.

- 사회정의야말로 파괴적인 성장강박을 그만두고자 하는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사회정의가 수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이에 덧붙여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떼어놓는 일은 개인의 차원에서의 성장강박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이며 사회생태적인 전환에 유리한 사회적 전제조건을 형성한다.
- 기본소득과 여기에 수반되는 경제적 사회정책적인 조치들에 의하여 사회적 안전, 민주적인 공동결정, 위로부터 아래로의 재분배효과, 대안적이고 연대적인 경제에 의한탈성장경제, 시간주권 등이 가능하게 된다.
- 기본소득이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조건은 이미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구 대다수에서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되었고 좋은 제안들은 전 혀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나아가 사회적 발전의 잠재력이 개화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의 발전 속에서 남편과 부인, 세대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예속이 극복되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어떠한 생태적 대가로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 속에서 정치적 자유공간이 열려야 한다.

짧게 말하자면, 탈성장 사회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기본소득 모델에는 해방적 기준들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아래의 도표는 독일에서 많이 토론되는 세 가지 모델들에 대하여 내가 해방적 기준들을 부과해 본 것이다. 최근의 관심사 때문에 나는 여기에 스위스 국민발의 이니셔티브 측 의 기본소득 모델도 포함시켰다.

독일에서 토론된 모델들	개별적 <u>으로</u> 보장된 권리	필요성에 대 한 심사 없음	대기에 대한 강제가 없음	삶과 참여를 보장	위에서 이래 로의 재분배 효과	탈성장효과 생태적 생산 과 소비, 의식 전환	현존 사회복 지시스템에 대한 연결성
기본소득 활동그룹 BAG Grundeinkommen	$\sqrt{}$	√	√	√		√ 직접적인 개 별적 유인 없 이 조치의 목 록이 확대되 어야 한다.	√ 시민보험으 로 개편하고 발전시킴
M. Hardt와 기업가 Götz Werner의 소비세모델	$\sqrt{}$	$\sqrt{}$	$\sqrt{}$	$\sqrt{}$			
자유민주당(FDP) Althaus 모델	√	√	√				
스위스 국민발의 이니셔티브의 Daniel Häni 모델	√	√	√	√ 가난한 사람 에게는 보장 효과 있음	이래에서 위 로의 분배 (콤 비임금 효과)		연금 포함하 여 현존 사회 보장 시스템 을 대체

해방적 기본소득은 전제가 많으며 대략 은행 구제와 보호를 위해 투입된 정도의 비용이 든다. 독일에서 해방적 기본소득은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잘 형성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가는 중인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연결성이 있다. 해방적기본소득은 더 많은 정의와 생활조건에서의 평등을 만들어내며, 더 정의로운 조세체계와 부담금체계에 의한 재분배라는 명료한 목표를 설정한다.

한국 속담이 따르면,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것은 두려워해야 한다. 해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의 증거 이다. 또한 청소년 배당이나 통상적인 노인기본소득과 같은 매우 작고 느린 발자국들은 도입모델이다. 경제와 자연의 결합을 보여주는 생태적 기본소득이 도입모델의 또다른 가능성인데, 그러한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 좌파당Die Linke 대표 카티야 키핑Katja Kipping 의원에 관한 간략한 소개

금민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1. 독일 좌파당의 현황

현재 독일 좌파당은 총 630석의 연방의회Bundestag에서 64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제 3당이다. 연방의회 의석비율에서 좌파당은 10%를 넘지만 주의회 차원의 선거결과에 서는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 전통적으로 좌파당은 동독의 튀링엔^{Türingen}과 전 대표인 오스카 라퐁텐^{Lafontaine}의 출신 주인 서독의 자르란트^{Saarland}에서 20%를 넘거나 근접 하는 좋은 성적을 거둬 왔다. 2005년 동독을 기반으로 한 민주사회당PDS과 서독 지 역과 노동조합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민주당에서 이탈한 좌파정치세력인 '노동 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의 선거연합으로 출범한 이후 독일 좌파당은 2007 년에 단일정당으로 재출범하였고. 2005~2012년 동안 꾸준히 서독 지역에서 정치 적 성공을 거둬 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 2012년에 서독 슐 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주와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의회 선거에서 5%를 얻지 못하여 원내정당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2013년에는 서 독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의회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서독 지역의 주의회 에서 원내 정당인 곳은 현재 자르란트Saarland 이외에 헤센Hessen, 브레멘Bremen, 함부 르크 Hamburg 으로 모두 4개의 주가 남아있다. 독일의 주의회 의원은 전국적으로 합산 하면 총 1845명인데 좌파당 주의원은 총 154명으로 연방의회에서 차지한 것보다 의 석비율이 떨어진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당원수는 58.989명이다. 독일의 국고보조 금은 전국선거 득표수와 당 후워금 액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2015년에 좌파당은 10.959.390 유로 60센트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유럽의회에서 독일 좌파당은 유럽

사회민주당 이외의 좌파정당들의 연합체인 '유럽좌파' European Left 의 일원이다.

2. 카티야 키핑 대표의 정치 경력

1978년 1월 28일에 태어난 젊은 여성정치인 카티야 키핑은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하는 베른트 리씽어Bernd Riexinger 와 함께 독일 좌파당의 공동대표이다.

키핑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작센 주의회 의원을 지냈고, 2005년에 독일 연방의회의원이 된 이후로 2009년, 2013년 총선에서 당선되었다. 재선의원이던 시절인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독일 연방의회 '노동사회 상임위원회'Ausschuss für Arbeit und Soziales의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7월 2일 좌파당 당대회에서 67%의 찬성으로 당대표에 선출되었고, 2014년 5월 좌파당의 베를린 당대회에서는 77%의 찬성으로 당대표에 재선출되었다.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도 2003년 7월에 좌파당의 전신의 하나인 민주사회당PDS 부대표로 선출된 바 있다. 현재 좌파당은 2인의 공동대표제를 두고 있으며, 카티야 키핑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베른트 리씽어Bernd Riexinger는 서독의 노동조합 운동을 대표한다. 리씽어는 2016년 3월 바덴-뷰템베르그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당 정당명부 1번으로나섰으나 2.9%로 참패하여 주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3. '해방좌파'의 발기인

당대표가 된 이후 키핑은 특정 정치그룹에 속하지 않고 있지만 '해방좌파' Emanzipatorische Linke 의 발기인이다. '해방좌파' 약칭 Ema.Li 는 좌파당 안의 공개 정파이며 전통적 사회민주 주의 분파와 전통적 사회주의 분파에 대하여 모두 거리를 둔다. 독일 좌파당 내부에는 몇 가지 정치적 경향이 있다. 정치적 경향은 공개적 정치그룹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해방좌파' 이외에도 주요한 정치그룹은 다섯 개 정도를 더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민

주주의 경향의 '개혁네트워크'"는 당내 역관계에서 가장 오른쪽에 포진한 소수파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입장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한 포럼'이라고 볼 수 있다. ² 당내 좌파로서는 세 개의 주요한 정치그룹을 들 수 있다. 서독의 노동조합운동의 좌파를 대표하는 '사회주의 좌파'³, 부유세,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 완전고용, 반군사주의 특히 EU의 군사행동 반대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는 '반자본주의 좌파'⁴, 그 외에도 가장 왼쪽의 '공산주의 포럼'⁵을 들 수 있다.

'해방좌파'라는 이름은 자유와 사회주의란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으로부터 연원한다. '해방좌파'의 구성을 알리는 호소문이자 첫 공개적인 문서는 2006년 율리아 봉크 Julia Bonk , 카티야 키핑현재당대표 , 카렌 라이 Karen Lay 현재당부대표 3인이 공동 명의로 낸 "자유와 사회주의 — 새로운 좌파 정당을 위한 해방적 사유의 단초들" Freiheit und Sozialismus - Let's make it real. Emanzipatorische Denkanstöße für die neue linke Partei 이다. 다른 정파와 달리 '해방좌파'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세계의 변화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기술혁신을 통하여 앞으로 더 급격하게 진행될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이와 같은 관심 속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해방좌파'의 핵심 강령으로 등장하게되었다. '해방좌파'는 독일 좌파당의 기본소득 활동을 총괄하는 '연방활동그룹 기본소득' BAG Grundeinkommen의 주요 성원을 이루기도 한다. 좌파당의 조직체계에서 '연방활동그룹'은 사업위원회 또는 부문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구인데, '연방활동그룹 기본소득'은당원 이외에도 비당원 회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¹⁾ 연방의회 부의장을 지낸 페트라 파우Petra Pau 의원이 대표적인 인사이다. 동독에서 사회민주당과 주정부 차원의 연정을 구성한 적이 있거나 계획으로 삼고 있는 주의회 의원들과 동독 지역의주요 정치인들은 대개 이 경향에 속한다.

²⁾ 베를린 시의원인 스테판 리비히 Stefan Liebich가 현재 이 그룹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³⁾ 이 경향의 대표적 인물은 사회민주당의 수상후보이자 전 대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 안'의 대표, 좌파당 원내대표와 대표로 정치경력을 이어온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이며, 그 밖에 과거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유명했던 부터베게^{Christoph Butterwegge}도 주요한 인물이다. 현재의 공동대표 리씽어도 이 경향에 가깝다.

⁴⁾ 현재 당 부대표인 반핵운동가 토비아스 플뤼거Tobias Pflüger가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⁵⁾ 현재 원내대표 2인 중의 한 명인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 2009년까지 이 그룹에 속했으나 2010년 이후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격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방좌파'에 속하는 주요 정치인으로서는 카티야 키핑 이외에도 현재 좌파당 부대표인 카렌 라이 연방의회 의원, 브레멘 주의회 의원이자 브레멘 당대변인인 크리스토퍼 슈페어 Christoph Spehr 등이 있다. '해방좌파'의 중요한 결정은 6인으로 구성된 코디네이션 그룹에서 이루어지며, 카티야 키핑은 이 기구의 전 대변인이었으나, 현재 이 역할은 카렌 라이 좌파당 부대표가 맡고 있다. ⁶⁾ 2012년 괴팅엔 당대회를 앞두고 '해방좌파'는 카티야 키핑 대표, 카렌 라이 부대표, 노르트하임—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 좌파당 명부 1번이었던 카타리나 슈바베디쎈 Katharina Schwabedissen, 얀 판 아켄 Jan van Aken, 토마스 노르드 Thomas Nord 가 공동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여 당내 개량주의 진영과 당내 전통사회주의 진영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명료하게 표현했다.

4. 독일 기본소득운동의 개척자

개인적인 이력을 살펴보면, 1978년생인 카티야 키핑 대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드레스덴 대학에서 슬라브문학, 미국문학, 공법을 전공하였고 슬라브문학으로 석사학 위를 받았고, 결혼을 했으며 슬하에 한명의 딸을 두고 있다. 의회 활동 이외에 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독일 기본소득운동의 개척자라는 이력이다.

카티야 키핑은 2004년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의 발기인이었으며, 2004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의 대변인을 맡았다. 이러한 이력은 2006년에 율리아 봉크 및 카렌 레이현부대표와 함께 기본소득을 주요 강령으로 하는 '해방좌파'를 창립하는 일로 이어진다. 2016년 2월의 언론 인터뷰에서 키핑은 "나는 15년 이상 기본소득을 위해 싸워왔다"라고 토로하면서 2015년 8월의 빌레펠트 당대회 이후 좌파당 내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대폭 증대한 것은 커다란 발전이라고 말했다. 2012년 괴팅엔 당대회에서 채택된 좌파당 강령은 노동 강제와 연동된 모든 종류의 소득보장에

⁶⁾ 카렌 라이는 2009년에 연방의회에 진출한 재선의원이며 2012년 이후로 부대표이며 2014년에 부대표로 재선되었다. 2016년에는 해적당 출신인 영화배우 안네 헬름Anne Helm이 좌파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해방좌파' 코디네이션 센터의 성원이 되기도 하였다.

반대하며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당내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빌레펠트 당대회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키핑은 자신이 주 발제자로 등장했던 토론회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 득에 관한 키핑의 관점은 특히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을 동일한 뿌리에서 바라보며. 사회 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을 연결시키는 관점이 특징적이다.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에 관해서도 많은 강연을 해 왔다.

5. 그 밖의 활동 - 이주자, 난민, 박해받는 사람들과의 연대

1975년 설립되어 탄압받는 좌파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하던 단체로서 '적색 보호'Die Rote Hilfe e.V.라는 단체가 있다. 2007년에 키핑은 좌파당 연방의원들을 규 합하여 이 단체에 가입했다. 이를 빌미로 독일 정부의 감청기관인 '헌법보호'는 2012년 독일 연방의회에 피감청인 명단을 제출할 때 카티야 키핑 의원당시상임위원장도 포함시켰 다. 이는 큰 논란과 비난을 샀다.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관심과 연대활동이다. 시 리아 내전의 여파로 한 해에 8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독일로 몰려오고 '독일을 위한 대 안'AfD과 같은 극우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를 넘을 정도로 급부상되던 2016 년 초의 정국에서 키핑은 "대체 누가 자발적으로 난민이 된다는 말인가? 난민의 원인에 대한 한 마디 말 또는 왜 우리 사회를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라는 제목 의 책을 출간하고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러한 활동은 난민 문제 로 폭발된 극우 공세에 정면 대결하고 좌파당의 기본가치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6. 잡지 편집위원, 정책연구소의 대변인

키핑은 2008년 5월 이래로 『프라하의 봄 - 자유와 사회주의를 위한 잡지』Prager Frühling -

Magazin für Freiheit und Sozialismus ⁷⁾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이 잡지는 '해방좌파' 경향의 기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론지가 아니라 광범위한 시사적인 문제를 다룬다.

2010년에 키핑은 '연대적 근대 연구소'Institut Solidarische Moderne e.V의 창립을 주도하고 이연구소의 대변인직을 맡았었다. 이 연구소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전통적 사회주의, 전통적 녹색정치운동의 외부에서 새로운 녹색좌파정치의 공통강령을 논의하고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의 창립에는 사회민주당의 헤르만 쉐어Hermann Scheer®와 안드레아 입실란티Andrea Ypsilanti®, 녹색당의 스벤 지골드 Sven Giegold 10 와 좌파당 현 부대표이자 재정정책 전문가인 악셀 트로스트 Axel Troost 연방의원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10년 당시에 이처럼 초정파적인 구성, 하지만 각 당의 비주류 정치인들이 발기인으로 등장한 이 연구소의 목표는 2013 총선에서 사민—좌파—녹색의 적적녹연정을 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좌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들 정치인 이외에도연구소에는 엘마 알트파티 Elmar Altvater 교수, 볼프강 네스코비치 Wolfgang Nešković 전 대법관, 안드레아스 피셔—레스카노 Andreas Fischer-Lescano 교수, 마하엘 오피엘카 Prof. Dr. Michael Opielka 교수, 스테판 레제니히 Stephan Lessenich 교수, 우테 칼비처 Ute Kalbitzer 박사 등 저명한 좌파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다수 참여했다. 2013년 적적녹 연정의 수립이라는 현실정치적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자 이 연구소의 현안적 성격은 상당 부분 불명료해졌지만 여전히 좌파 3당을 아우르는 대안적 연구소로 자리 잡고 있다. 11)

⁷⁾ http://www.prager-fruehling-magazin.de/

^{8) 1980}년 이후 연방의원이었고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적이 있다. '연대적 근대 연구소'가 창립되자마자 2010년 10월에 작고했다.

⁹⁾ 현재 헤센주의회 의원이고, 사회민주당 헤센주의회 선거에서 1번 후보로서 주지사에 도전한 적이 있다. 좌파당과의 연정을 주장했고, 그러한 이유로 사회민주당 내에서 소수파이다.

¹⁰⁾ 현재 녹색당의 유럽의회 의원이다.

¹¹⁾ http://www.solidarische-moderne.de/

⁰⁵⁰ 독일 좌파당 Die Linke 대표 카티아 키핑 Katja Kipping 초청강연회 자료집

7. 주요한 저서 세 권

1) 크리스티네 부흐홀츠와 공동 편찬한 "G8 - 불의의 정상회담』, 2006

Katja Kippig/Christine Buchholz (Hrsg.): G8 – Gipfel der Ungerechtigkeit. VSA, Hamburg 2006

2) 『정치의 매진 - 민주적 출발을 위하여』, 2009

Katja Kippig, Ausverkauf der Politik – Für einen demokratischen Aufbruch. Econ, Berlin 2009,

3) 「대체 누가 자발적으로 난민이 된다는 말인가? 난민의 원인에 대한 한 마디 말 또는 왜 우리 사회를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2016년 최신작

Katja Kippig, Wer flüchtetet schon freiwillig? Eine Wortmeldung zu Fluchtursachen oder Warum sich unsere Gesellschaft neu erfinden muss. Westend Verlag, Frankfurt, 2016

해방적 기본소득과 탈자본주의 이행

Emancipatory Basic Income and a Transformation to Postcapitalism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Geum, Min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이 글은 해방적 기본소득 Emancipatory Basic Income 을 탈자본주의 전략으로서 다룬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조건적 기본소득 Unconditional Basic Income 에 대한 특정한 이해방식으로서 해방적 기본소득이 정의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탈자본주의 상도 최소한의 개념적 명료성 속에서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명료하게 한 후, 이 글은 한편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이 핵심적인 요소로서 포함된 탈자본주의 이행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정치 전략적 타당성을 따져본다.

물론 기본소득을 주요한 수단으로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탈자본주의 이행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글에서 제시된 이행 프로그램만이 유일한 프로그램은 아닐 것이다.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현실성은 주어진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은 2016년 현재의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는 중범위 전략으로 설계된 것이기에, 그 타당성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시공간에서의 현실부합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1. 해방적 기본소득의 개념과 탈자본주의의 상

1) 해방적 기본소득

대개의 기본소득론은 모든 시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현물형태의 공공서비스, 즉 무상공공의료, 무상공공교육, 무상공공교통 등을 기본소득의 개념에 포함시킨다.¹⁾ 이러한 관점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독자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보편적 현물공공서비스를 기본복지 또는 공공서비스라고 표현하고 기본소득은 현금기 본소득에만 한정하여 사용한다.

넓은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란 국가 등 정치공동체로부터 개별적인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며. 이러한 현금이전은 노동 여부와 무관하며 일체의 자산 심사 없이 이루어진다. 즉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충족시키는 현금 이전은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방적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준 이외에도 충분성 기준을 기본소득의 본질적 지표의 하나로 삼는다. 즉 기본소득의 지급액수는 인간다운 삶에 충분하며 사회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려면 기본소득 지급액수는 상당히 높아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발전된 국민경제에서도 충분성 기준에 부합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총조세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올리거나², 그렇지 않다면 사회화된 부문이나 공유자산 등 조세 이외의 재정기반을 전제해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 지급액만으로 충분한 삶이 가능한 경우를 '강한 기본소득 모델'strong models of basic income 이라고 부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를 '약한 기본소득 모델'weak models of basic income 이

¹⁾ 예컨대 Ph. 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42~45; Y. Vanderborght/Ph. Van Parijs, Ein Grundeinkommen für alle, Frankfurt/New York 2005, S. 37~38.

²⁾ 신자유주의의 감세 기조에서는 70% 과세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류경제학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쉽게 발견된다. 실제로 제한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로 197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은 2000년 Boston Review, oct. 1에 모든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획득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90%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경제활동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70%로 일률 과세하고 그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었다: https://bostonreview.net/forum/basic-income-all/herbert-simon-ubi-and-flat-tax

라고 부르겠다.3)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정관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만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여기에 충분성도 기본소득의 기준으로 포함시키자는 정관 개정안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네트워크의 발의로 제출되었고, 유럽네트워크UBIE와 한국네트워크BIKN의의 지지를 얻어 오는 7월의 지구네트워크 총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급액수가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참여에 충분할 것을 기본소득 기준으로 넣을 것을 요구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지급액수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적 기본소득'도 기존 복지의 축소를 통해 재정을 조달하지 않으며 충분한 기본소득을 장기적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지구네트워크가 이를 배제할 필요가 없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두고있다.

이 글에서 제시된 기본소득 모델은 1인당 월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약한 기본소득' 모델이다. '약한 기본소득 모델'은 일단 지급액수의 충분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자체로는 '해방적인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도입모델에 불과하며 충분한 액수를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한다. 더욱이 기존의 복지재정을 현금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본복지 재정의 확충과 기본소득 도입을 병행하려는 모델이다. 도입모델이므로 지급액수는 적지만 궁극적 지향점인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으로의 발전 경로가 이 모델의 내재적 요소로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도입모델

³⁾ 이러한 구분은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Red renta básica 와 별도의 운동단체인 '평등한 사람들의 기본소득'Renta Básica de los Iguales 을 이끄는 호세 이글레아스 페르난데스José Iglesias Fernández 가처음 제시했다: "Strong Models versus Weak Models of Basic Income in Catalonia", http://www.basicincome.org/bien/pdf/2002Fernandez.pdf 그는 빈곤선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의 50%의 지급액수를 '강한 모델'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그밖에도 현물 공공서비스 복지재정 규모에 대해 일반 시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도 '강한 모델'의 기준으로 넣는다. 이 글에서는 지급액수와 관련된 첫 번째 기준만을 '강한 모델'의 기준으로 삼는다. 2002년 카탈루냐 의회는 기본소득법률안을 심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급액수와 관련하여 '강한 기본소득 모델'과 '약한 기본소득 모델'의 구분이 등장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페르난데스의 위 글과 안효상, "카탈루냐-스페인 기본소득운동의 궤적", 월간 『좌파』 12호, 82—102를 참조하라.

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2016년 1월 24일의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의결하였다.

도 궁극적 지향점과 이를 향한 내적 발전경로를 명확히 한다면 충분히 탈자본주의 이행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탈자본주의 이행의 초보적 단계에서 기본소득 지급액수가 적은 도입모델이 이행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실업이나 불안정 노동, 저임금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잠정적인 해결책으로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즉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사태로 전제하고 노동과 무관한적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통해 약간의 소득안정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령 적은 액수더라도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불안정노동체제를 변화시키고 경제모델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체제 변화 및경제모델 전환과의 상관관계가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만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 모델이탈자본주의 이행 전략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글에서 제시한 도입모델이 해방적 기본소득 또는 탈자본주의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는 도입효과에 대한 판단과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즉 기본소득을 포함하는 이행 프로그램 전체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또한 설령 도입모델의 기본소득 지급액수가 빈곤선 이하일 경우에도 충분선 기준은 다른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비록 기본소득 지급액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가 공급되고 일자리를 가진 모든 사람의 임금과 기본소득을 합친 액수가 인간다운 생활에 충분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소득 액수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을 더한 액수가 인간다운 생활에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낮은 액수의 도입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에 있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예외 없이 충분한 총소득을 얻을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⁵

물론 이 글은 이와 같은 도입모델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앞에서 예고했듯이, 이 글은 도 입모델로부터 출발하여 기본소득의 재정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도 함께 다 룰 것이다.

⁵⁾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금민, "기본소득 — 현황과 전망", 48-49, 월간 『좌파』 6호, 43-59.

2) 탈자본주의

이 글에서 탈자본주의 이행이라고 말할 때 목표점인 탈자본주의는 소유형태로 볼 때 사적 자본주의 경제, 협동적 연대적 사회적 경제, 국유부문이나 사회화된 부문이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 각각 1/3 정도의 비중을 가진 혼합경제라는 점을 밝혀 둔다.⁶⁾ 이와 같은 혼합경제로서의 탈자본주의와 유사한 구상은 제임스 미드⁷⁾에게서 발견된다. 이와 같은 탈자본주의는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글의 목적은 그 명칭을 무엇이라 부르든 탈자본주의적 혼합경제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이행 프로그램에서 기본소득의 역할과 기능, 기본소득 도입과 연동된 사회경제적 이행프로그램의 그 밖의 내용, 나아가서 그러한 경제적 이행 프로그램 전체의 의의와 특히 그 중에서 기본소득의 정치 전략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다.

3) 이행 전략과 기본소득 재정기반

이 글은 탈자본주의 이행을 위한 전략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을 다룬다. 그렇기에 기본

⁶⁾ 이와 같이 소유지배관계를 중심에 둔 혼합경제적 탈자본주의는, 최근에 주목받는 주장인 폴 메이슨의 탈자본주의Postcapitalism와는 논의의 층위가 다르다. 메이슨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의 필요의 감소, 노동과 여가의 구분의 약화, 노동과 소득의 연계성 약화 등의 상황에서 이행의 조건을 발견하며 국가가 기본소득, 금융시장 개혁, 사회적 경제 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탄소제로 에너지체계, 한계비용 제로 생산체제,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 제로의 탈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P. Maison, "The End of Capitalism has Begun", The Guardian, 17 July 2015; Post—capitalism: A Guide to Our Future, Penguin 2015, 메이슨이 제시한 탈자본주의 논의 위에서 기본소득 전략을 다룰 필요는 충분하지만, 이 글의 주요 과제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의 해소 방안으로서 기본소득 전략을 다루는 일이고, 따라서 이 글에서전제된 탈자본주의의 상도 마찬가지로 소유지배관계와 사회적 노동의 조직 방식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⁷⁾ 제임스 미드에 관해서는 강남훈/권정임, 공유경제와 기본소득 — 제임스 미드James Meade의 아 가싸토피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문; 권정임, 공유사회와 기본소 득-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대와 철학(26권 2호); J.E. Meade, Liberty, Equality and Efficienc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3; Full Employment Regained? An Agathotopian Dre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소득의 재정기반은 이 글에서 이행전략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정기반을 유형화하자면 조세형과 공동소유 common ownership에 입각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세형의 경우 직접세 중심인가 간접세 중심인가, 자본소득 증세인가 보편증세인가, 동일세율 flat tax 또는 이에 근접한 방식인가 아니면 강한 누진세인가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은 사적 자본주의 부문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화된 부문을 기본소득 재정기반으로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이는 탈자본주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는 상태에서의 기본소득 재정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형에서 공동소유형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조세형과 공동소유형의 혼합형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과 재정을 통한 사회화 전략을 결합시키는 것도 가능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조세 이외에도 재정을 통한 사회화 전략을 기본소득 및 현물공공서비스의 재정모델로 삼아 조세형과 공동소유형의 혼합모델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도입모델에서 출발하여 빈곤선 이상을 지급하는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이행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II. 출발 상황과 도입모델 -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와 기본소득 전략의 정책적 목표

2008년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이며 사회적 재생산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윤율의 저하와 과잉축적 등 여러 층위의 이론적 설명이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위기의 현상 형태에 대해서는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있다. 그것은 불안정노동체제의 전면화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저하, 이로 인한 소득기반의 위기이며, 이는 금융자본주의의 위기로 이어지고, 사회재생산 위기와 생태적 위기로 격화시킨다. 현재의 위기는 분명히 금융주도의 자본축적체제이자 특정한 노동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불안정노동체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두가지 현상 형태는 동시에 탈자본주의 이행의 조건을 구성한다. 즉 이행 프로그램은 금

융자본주의의 위기와 불안정노동체제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나아가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통해 더 진전된 국면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기본소득 전략의 핵심은 한국 신자유주의의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획기적인 노동시간단축과 기본소득을 연동시킨 프로그램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기본소득 지급액수는 1인당 월 30만원과 같은 '삶에 충분한 액수'가 아니다. 이와 같은 도입모델이 의의를 가지려면, 그것은 1차 분배의 개선, 즉 일자리 분배와 노동소득의 제고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1차분배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2차 분배가 아니라 기본소득과 같이 노동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무조건적 소득을 노동체제개혁의 수단으로 끌어들임으로써 1차 분배 개선효과를 낳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을 통한 1차 분배 개선의 결과로 나타날 가계 가처분소득의 제고가 무엇을 뜻하며 어떤 목표를 가지는지도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 전략을 포함하든 않든, 모든 이행 프로그램은 현재 국면이 자본주의의 장기침체 국면이며 저성장 국면이라는 현실 인식 위에 근거하여야 한다. 장기 추세로서 저성장 침체기라는 인식에 기초할 때, 임금소득 증대로 내수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투자와 고용이 유발되며,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임금주도 · 소득주도 성장론의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각종 임금개혁을 통하여 50년 대와 60년대에 가능했던 자본의 안정적 축적, 장기호황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낭만적 가정이다. 불안정노동체제가 존속하는 한에서 그와 같은 임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노조의 교섭력은 결코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정책을 통한 개입을 불안정노동 비중의 감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의 확보가 실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더 큰 틀에서 보자면, 노동자와 서민의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 내수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은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경제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기본소득 도입모델, 이를 통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가계소득 기반경제'는 성장정책이 아니라 저성장 경제학이다. 특히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지난 3년 동안 매년 절반씩 떨어지고 급기야 2015년에는 15%에지나지 않게 된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성장형 경제에서 아무리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해도 내수성장만으로 개발경제 시기와 같은 고성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제안하는 가계소득기반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파국을 피하는 길이자, 급진적 개혁을 통해 다른 종류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기본소득 도입모델의 효과: 한국의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노동체제 해소와 경제모델 전환

1) 한국 자본주의의 노동체제 현황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2016년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연간 354시간을 더 많이 노동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하는 이유는 물론 저임금 때문이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도 이유는 다르지만 장시간 노동을 한다. 즉 정규직의 임금구성이 기본급 중심이 아니라 수당과 상여금 등 변동급여 중심이라서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제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저임금 체제의 원인은 불 안정노동체제라는 점이 드러난다. 비정규직은 이미 전체 노동자의 45.2%, 정부통계를 바탕으로 한 OECD 통계를 따라도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 직과 비정규직의 이중화는 임금격차를 낳았다. 그런데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정규직 대 비 49.7%에 불과할 때, 정규직의 임금조차 정체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8년 이후로 하락 추세이며, 한국 신자유주의의 고성장기에도 하락했다.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포함하든 제외하든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주요국보 다 10%p 이상 낮다.

이와 같은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기능은 수출주도성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시대에 시작된 한국의 수출주도성장은 1998년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도 한국 경제모델의 근간이었다. 그런데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문제점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적 하락에서 나타나듯이 임금소득의 저하와 내수기반의 축소이다.

이를 보충해 온 것이 부채자산경제와 부채의존소비이고 그 결과는 가계부채 폭증이다. 지금처럼 수출주도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국면에서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는 더 큰 위기의 도화선이 된다.

2)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노동체제의 해소 방안

경제적 이행이 수학문제 푸는 것이라면 해법은 사실 간단하다.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없어질 것이다. 불안정노동체제가 저임금의 원인이며, 저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나타난 것이니 비정규직을 없애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 이행은 이와 같은 금지입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행을 위해서는 추진세력도 필요하겠지만 목표점까지의 경로, 즉 경제적 대안이 필요하다. 즉,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하려면 이를 대체할 다른 종류의 노동체제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정규직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것은 하나의 유력한 방 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정규직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추가고용을 늘리 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어차피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이라 기업은 부채축소에 골몰할 뿐이며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를 도입해도 세수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작 기업은 불확실한 투자보다는 징벌적 과 세가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간 한국 진보담론에서 늘 등장하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나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사회화도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사회서비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되어 있으며 일자리의 질이 문제이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공교육 강화로 공공교육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해도 사교육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비슷비슷한 수준일 것 이다. 분명한 점은 공공공급체계로 전환이 일자리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 뿐이다. 하지만 여기로부터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 여력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산업노 동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고용비중이 옮겨가는 시기에 공공서비스가 확충되지 않았고 민간서비스 시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고용률을 높이면서 비정규직 비중을 동시에 줄이는 유력한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난관이 등장한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의 하나인 기업 양

국화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경제력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고용구조는 중소기업 중심이다. 2013년 중소기업 고용비중은 76%로 나타난다. 설령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중소기업이 감당한다 하더라도 추가고용 여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큰효과가 없다. 노동시간단축이 매우 획기적인 폭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만 불안정노동 비중이 축소되며 고용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미미한 단축으로는 불안정노동 축소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국면이어서,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 유지를 넘어서 불안정노동 축소와 고용률 제고라는 효과를 낳으려면 획기적인 노동시간단축이 필요하다

단축되는 노동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정노동 비중을 줄이고 전체적인 고용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오브리법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노동시간단축은 혁신을 낳아 단축된 노동시간만큼의 추가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볼프강 슈트렉Wolfgang Streek 이 '유익한 제약Beneficial Constraints'》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듯이 자본 활동의 제약은 자본의 합리화로 이어진다. 게다가 제4차 산업혁명이나 자동화도 곧 닥쳐올 문제이다. 결국 대대적인 기술혁신이다가오는 시점에 노동시간단축은 기술혁신을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술혁신을 거부하는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 답이 아니라면 차라리 일자리 문제에 실효성을 가

⁸⁾ 오브리Aubry 법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략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런데 애초에는 주당 35시간 상한제였지만 2000년부터는 연간 1600시간 상한제로 바뀌었고, 연간 130시간이던 연장근무는 단축하지 않은 채 할증률만 높였기 때문에 고용효과는 기대한 수준에 못 미쳤다. 오브리법은 불황과 조업축소를 감안하면 최대 고용효과는 단축된 노동시간의 절반 정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단축된 노동시간의 40% 정도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대로 잠식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 Steffen Lehndorff, "Die Einführung der gesetzlichen 35-Stunden-Woche in Frankreich – Ein Zwischenbericht"(http://www.memo.uni-bremen.de/docs/m0401.pdf). 2002년 이후 보수주의 정부의 등장으로 2003년 사르코지가 오브리법을 폐기한다.

⁹⁾ Wolfgang Streek, "Beneficial constraints: on the economic limits of rational voluntarism", in: J. Rogers, J.R. Hollingsworth(eds.), Contemporary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질 수 있을 만큼 노동시간단축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대적인 노동시간단축은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도입모델의 역할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열 쇠가 될 수 있다. 먼저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도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 도록 임금개혁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은 이와 같은 방안 이 직면할 한계지점을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 일어나도록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대공장 정규직의 경우에는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성을 바 꾸고 월급총액을 노동시간으로 나는 시간급 체제로 전환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커 다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임금개혁에는 일정한 한계 가 있을 것이다. 즉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금개혁의 목표는 바로 그러한 한계와 마찰적인 지점에 놓여 있다. 바로 임금 개 혁은 저임금 체제의 전반적인 해소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 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임금격차가 다소 줄어들어드는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 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구성과 임금체계를 개편한다고 해도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이 최소화되는 수준에 머물 뿐이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노동소득분배 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10% 이상 올리는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임금개혁 만으로 전체노동자의 총소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최저 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더 올리면 되겠지만, 고용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인 한국에서는 고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구조는 임금개혁만으로 경제모델 전환 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게 한다. 즉 단순히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한다는 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가계 가처분소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부채의 존소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려면. 임금개혁 이외의 다른 수단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료, 교육, 주거, 교통, 통신 등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여 정상적인 복지국가였다면 당연히 국가가 담당했어야 할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가계 지출을 절감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처럼 노동과 무관한 소득을 도입하여 국가가 개별적 사회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실시하는 것이다. 물

론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력하게 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본이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부담 간접세 중심인 한국 조세체제를 고부담 누진직접세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개별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금개혁과는 달리기본소득은 국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이는 조세체제의 전환 없이는 기본소득 도입이불가능하다는 뜻이다.

3)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 수단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 노동소득의 손실을 부분적으로는 임금개혁을 통해 보전하고 부분적으로는 기본소득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총소득 이 증대되도록 하는 투 트랙을 생각할 수 있다. 획기적인 노동시간단축을 전제로 하고 두 방향에서의 개입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 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하고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여되며 더 적 은 시간을 노동하면서도 충분한 소득을 얻는 연대적 노동사회'로 나아가는 전체적인 프 로그램의 핵심적 요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¹⁰

- 1) 법정노동시간은 주당 35시간을 상한으로 하고 연장근무도 주당 5시간으로 제한 하며 11)
- 2)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성을 바꾸며, 연장 근무 할증률은 지금의 두 배로 올린다.
- 3)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는 조세개혁을 통해 총 253.7조 원의 추가적인 공공복지재정을 마련하고, 그 중 기본소득에 184조, 나머지는 의료, 교육, 보육, 대중교통의 공급체제 공공화와 무상화에 투입한다.
- 4)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되는 보편적 기본소득 이외에도 특별기본소득의 형태로 장애인과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노인인구에게 보편수당을 지급하며, 일종의 참여

¹⁰⁾ 금민, "노동시간 단축 - 완전고용 연동제의 쟁점들", 월간 『좌파』 31호(2015, 11월), 10-17

¹¹⁾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소득participation income 의 형태로 농민기본소득, 아동돌봄수당 등 추가적인 현금이전정 책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전체적 틀에서 기본소득과 공공서비스는 노동시간단축에 도 불구하고 총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가계 가처분소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¹²⁾

이와 같은 보완책을 전제할 때에는 획기적인 노동시간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불안 정노동 비중을 줄이는 과정이 가계소득의 전반적인 상승과 연동되게 된다. 따라서 기본 소득과 공공서비스 확충은 장시간노동체제의 해소와 고용률 증대가 저임금체제와 불안 정체제의 해소로 이어지도록 해 주는 징검다리라고 볼 수 있다.

4) 기본소득과 노동시간단축의 연동에 관하여

기본소득을 노동시간단축과 연동시킨 모델은 앙드레 고르^{A. Gorz} 이래로 제법 긴 논의역사를 가지고 있다. ¹³ 물론 고르의 경우, 이와 같은 연동모델은 임금노동 중심의 노동사회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이 중심이 되는 활동사회 또는 생태적 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틀에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불안정노동체제의 수립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면 서도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시간단축과 기본소득의 연동이 고려되기 시작했다.¹⁴

그런데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임금 이외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정책은 이미

¹²⁾ 금민, "저성장 시대, 대안은 무엇인가?", 21면, 월간 『좌파』, 32호(2015, 12월), 9-24

¹³⁾ Andre Gorz, Reclaiming Work: Beyond Wage—Based Society, tranl. by Chris Turner, Polity Press, 1999 (Editions Galiee, 1997).

¹⁴⁾ Stephan Krull, Schritte aus der Krise: Arbeitszeitverkurzung, Mindestlohn, Grundeinkommen — drei Projekte, die der Attac/AG ArbeitFairTeilen zusammengehoren, Reader, Hamburg 2009 (VSA Verlag); Min Geum, Reconstruction of the Labour Society by the Basic Income Guarantee, 15th BIEN, 2014.

시행 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가 조세로 노동시간단축을 보상하는데, 독일은 단축된 시간에 대해 임금의 67%와 사회보장수령액의 50%를 24개월 간, 네덜란드는 임금의 70%를 15개월, 벨기에는 임금의 75%를 12개월 동안 국가가 보상한다. 물론 한시적 보상이라는 문제가 따른다. 그밖에도 임금의 일정부분을 조세로 보상하는 방식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에 임금격차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임금액수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이라 말할 수 있다.

불안정노동체제의 등장은 기본소득을 노동자의 소득기반의 유지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만들었다. 실업자에게 지급되던 실업수당이나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던 사회부조 등과 같은 조건부 수당으로서는 불안정노동자의 낮은 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일자리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는 발상은 불안정노동체제를 온존하면서 불안정노동자에게 소득안정성을 공급하는 보완책도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도정치세력이나 나아가 우파 정치세력의 일부까지 기본소득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불안정 노동체제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소득안정성을 부여하여 내수기반을 만들려는 목표에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특히 좌파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은 불안정노동 비중을 줄이는 대대적인 노동시간단축과 연동될 필요가 있다. 15)

5) 가계소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완책

¹⁵⁾ 노동시간단축과 기본소득의 연동은 일자리 경매모델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사회부조가 지급된다고 가정하고 또한 노동시간을 나누어 판매하는 일자리 경매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일자리 경매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일자리와 일정 수준의 사회부조를 얻는 균형 상태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일자리 경매모델은 마치 기본소득이 노동소득에서 지불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일자리를 구매할 때 쓰이는 대금이 고용보험에 기초를 둔 실업수당이 아니라 조세로 유지되는 사회부조이며 평균임금 정도의 넉넉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가정하는 순간 그러한 오해는 해소된다. 일자리 경매 모델과 기본소득을 연동시킨 사고실험은 그루트가 이미 제시한 바 있는데, 그러한 모델이 기본소득 모델에 부합되려면 평균임금 정도의 사회부조가 실업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가정해야만한다: Loek Groot, Basic Income, Unemployment and Compensatory Justice, 2004, chap. 3.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무상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며, 이를 전제로 노동시간단축을 단축하며, 이와 병렬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체제 개혁 등 임금개혁을 실시한다면, 불안정노동 비중을 줄이면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기본소득이나 사회임금 같은 노동 외 소득을 수단으로 일자리와 노동소득의 분배를 개선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1차분배의 개선은 분명 노동자 가계의 소득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개선 효과가 순소비지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신자유주의는 금융 주도의 축적체제이며 선진국에서 이는 부채의존성장 모델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출주도성장형 경제이지만 내수는 부채의존형이다. 한국에서 1998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적 하락과 부채자산경제의 확대는 가계부채 문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가계부채는 2015년 2분기에 이미 1,130조한국은행로 이미 위험수준에 도달했다. 16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임금개혁과 기본소득을 통해 증가된 소득은 순소비지출로 이어지지 않고 주로 원리금 상환에 쓰일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3)에서 서술한 일련의 정책 패키지가 가계소득기반경제로이어지려면 가계 부채 탕감책이 반드시 덧붙여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세기반 탕감책과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과 위험관리에 동원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양적 완화를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과 장기적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은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for people 라 부를 수 있겠는데, 이는 아래에서 따로 논한다. 양적 완화의 경우 누가 수혜자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관건이겠지만, 조세를 통한 탕감은 누가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의 자산불평등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

¹⁶⁾ 국제기준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기준 164,2%로, 금융위기 직후 2009년의 미국(129,1%)보다 높고, OECD 평균인 132,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4년 2월에 2012년 말 기준 163,8%에서 2017년까지 5%p 인하하겠다는 관리 목표치를 제시했으나 그 이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속에서 이 같은 목표는 실종되었다. 2014년 명목 국 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총액은 저량을 기준으로 81%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임계치인 75%를 넘어섰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대출금 상환액도 소득 1분위 계층에서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¹⁷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보유에도 자본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기본소득 도입과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조세체제 개혁

1)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이 글에서 제안한 기본소득은 월 30만원의 '약한 기본소득 모델'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매년 184조 가량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가계부채탕감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하더라도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개혁과 무상화에 필요한 재정까지 합친다면 최소 253.7조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조세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방비와 토건예산 절감으로 기존 재정의 일부를 돌린다 하더라도 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총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은 2015년 기준으로 23.9%, 2018년 추정치는 24.2%에 불과하다. 반면에 OECD 평균은 2015년 34.1%이다. 약 10%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정확하게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이 10.2%인 반면에 OECD 평균은 21.7%라는 차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부담률을 올려서 마련되는세수를 모두 복지재정에 돌려야만 공공복지지출이 OECD 평균에 근접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OECD 평균^{34.1%}이나 그보다 조금 높은 38% 정도의 총조세부담률을 조세개혁의 목표로 삼는다면 253.7조원의 추가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여기에 국방비및 토건예산을 절감하면 300조 가량의 복지재정이 마련될 것이다.

¹⁷⁾ 보건사회연구원(2015)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은 상위 10%가 전체의 29.1%를 차지하지만 순자산은 43.7%를 보유한다. 반면에 하위 40%는 전체 가처분 소득의 13.4%, 순자산의 5.9%만을 보유한다.

2) 어떻게 증세할 것인가?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증세할 세목일 것이다. 이 문제는 세부적 세목에서의 실효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과 비교하여 그만큼 올리면 해결된다. 이자, 배당, 임대소득을 근로소득과 종합과세하고 누진율을 높이는 방법, OECD 수준의 생태세 도입, 법인세 실효세율을 OECD 수준으로 올리는 것 등이 주요한 개혁 과제가 될 것이다.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의 제고란 조세체제를 고부담 체제로 바꾸자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는 누진직접세 중심체제로의 전환을 뜻한다. 한국의 총조세에서 직접세 비중은 2012년 50.3%로 60~70% 사이에 걸쳐 있는 OECD 주요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높은 간접세 비중은 낮은 누진성과 동전의 양면이고, 그 결과는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이다.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세율을 인상하며 토지보유세율을 높여야 한다. 한국의 간접세중심 조세체제를 OECD 주요국처럼 누진직접세 중심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지급액수 1인당 월 30만원의 도입모델은 불로소득 증세로 누진소득세 중심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보편증세를 한다면 OECD 최고수준까지 총조세부담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강한 기본소득 모델'로 이행하고자 할때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재정을 전적으로 조세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적어도 1인가구 빈곤선에 접근하는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총조세부담율을 45-48%까지 올려야 한다. 하지만 도입모델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개혁이다.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최고세율을 높여서 누진성을 강화하며, 최하소득구간 이상에서는 일체의 조세감면을 철폐해야 한다.

도임모델의 단계에서 불로소득 누진과세가 보편증세보다 우선이며 누진직접세 중심체제의 수립이 현 단계의 조세개혁의 목표라는 점은 보편증세의 역사적 맥락과도 관련된다.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을 목표로 하는 보편증세는 국민개세와는 달리 신자유주의적 현상이다. 이는 레이건 행정부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1991년에는 스웨덴에까지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조세제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조세의 재분배 기능은 약화되고 아래로부터의 조세추출이 늘어났는데, 북유럽 모델의 대표인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기의 조세 개혁'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1991년 개혁은 신자유주의적조세개혁의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의 조세추출능력은 유지하되 투자와 근로에 중립적인 세제가 되도록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을 목표로 삼아 개인소득세율과 법

인세율을 대폭 낮추고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대신에 각종 조세감면의 폐지와 간접세의 인상 등이 뒤따랐다. 결국 스웨덴의 높은 복지지출은 50년대나 60년대의 황금기와는 달리 지금은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3) 조세개혁과 경제모델 전환의 상관성

저부담 간접세 중심의 조세체제에서 고부담 누진직접세 중심체제로의 전환은 기본소 득 도입과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경제모델의 전환에 연관된 문제이다. 저부담 간접세 중심체제는 박정희 시대의 수출주도성장의 산물이다. 수출경제가 주도했던 고도성장기 이후 내수기여도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이러한 조세체제가 아직까지 유지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선 이후 각국이 다투어 법인세 인하경쟁을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감세 기조였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앞서 밝혔듯이, 수출주도성장으로부터 가계소득기반경제로의 전환은 한국에서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중요 과제를 이룬다. 고부담 누진직접세 중심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계소득기반경제가 가능하기에 이와 같은 조세체제 전환은 탈신자유주의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18)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높이자는 주장은 2013년 이래로 기본소득한국네 트워크BIKN를 중심으로 제안된 서로 약간씩 다른 여러 조세모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주장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노동당과 녹색당이 그러한 주장을 했다. 노동당의 경우에는 불로소득 누진과세, 생태세, 자본보유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세개혁안을

¹⁸⁾ 조세체제와 경제모델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금민, "조세체제 개혁과 경제모델 전환", 월간 「좌파』, 34호(2016년 2월), 52-88 참조. 그런데 기본소득 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에 높은 세율의 평률세 Flat Tax도 재분배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상위 20위의 부자가 하위 30%의 소득 합계에 맞먹는 소득을 얻고 있는 스페인에 대해 다니엘 라벤토스 Daniel Raventos는 49%의 평률세와 빈곤선 이상의 기본소득 지급을 연동할 때 평률세는 역진적이지 않고 재분 배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기본소득 : 주민의 물질적 생존을 보장하는 합리적 안"(Basic Income: A Rational Proposal Guaranteeing the Material Existence of the Population),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창립기념 대토론회 2차 심포지엄: 조세개혁과 기본소득 발표문. 그런데 기본소득 도입을 전제로 한 높은 세율의 평률세의 구체적인 재분배효과는 일 반화할 수 없고, 해당 사회의 소득불평등 상황과 매우 큰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대정당이 외면했으며 시민사회에도 큰 반향이 없었다. 그이상의 확장이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증세에 대한 대중적 여론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과 닿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령 기본소득 도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현안 과제로 보는 복지국가론이라고 하더라도 증세는 우회할 수 없는 문제다. 대대적인 자본소득 과세와 누진직접세 체제로의 전환을 회피하고서는 복지국가 실현이 요원할 것이다. 불안정노동체제로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보험료의 인상만으로는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없으며 보편증세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비록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OECD 주요국의 사회민주당조차 자산세 형태의 대대적인 부유세 인상을 주장하게 된 2008년 이후의 정세에서, 보편증세로 중부담중복지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신자유주의 위기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극적 처방일 뿐이다. 이처럼 조세체제 전환은 기본소득 도입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도 탈신자유주의의 독자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Ⅴ. 도입모델로부터 충분한 기본소득으로의 전개

: 기본소득 전략과 사회화 전략의 결합

1)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의 확장과 강화

한국 신자유주의는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노동체제를 전면화했고 이로 인한 가계소득기 반의 붕괴는 가계부채 폭증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기본소득은 이 문제를 총 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책들을 연결하는 중심적 고리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도입모델로서 기본소득 전략은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 위기라는 조건에서 탈자 본주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 주는 출발점을 이룬다. 위에서는 그 재정적 기반으로서 조 세체제의 전환을 전제했다. 도입모델에서 1인 가구 빈곤선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까지 전개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더 올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증세도 고 려할 수 있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에 과세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2) 자본보유세, 사회화 기금, 공유자산형 기본소득

당연하게도, 조세체제의 전환이라는 과제 그 자체에는 신자유주의가 해체한 1950년대 와 60년대의 조세국가의 복원을 넘어서는 사회화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세로 사회화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금융자산에 자본보유세를 부과하여 사회화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일차적으로 생계형 부채 탕감에 쓰고, 가계부채 문제가 정리되고 난 이후에는 사회화 기금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사회화된 공유경제의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그것은 조세형 기본소득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공유자산형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본보유세는 조세연동형 사회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본보유세를 매개로 하여 공유자산형 기본소득으로 이행하는 방안은 조세형 기본소득과 공유자산형 기본소득을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만들어 준다. 그럼에도 공유자산의 형성을 위한 기금은 조세라는 점에서 여전히 조세중심적인 발상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결국 자본보유세를 통한 조세연동형 사회화 방식도 여전히 조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행의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정책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기본소득 전략은 무조건 조세중심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세체제의 전환이 경제모델의 전환에서 중요한 과제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국면에서 기본소득은 조세형 기본소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전체적인 이행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행의 국면이 조세체제 전환의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 또는 보다 전면적인 차원으로 발전한다면, 기본소득의 재정기반도 조세형과 공유경제형의 혼합형이 될 수 있다.

3) 기본소득 재정기반으로서 비전통적 금융정책

조세 이외의 재정기반을 통해서도 기본소득 도입이나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08년 위기 이후 조세체제를 50년대나 60년대의 고부담 자본과세로 되돌릴 수 없었던 각국 정부는 비전통적인 금융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도입하였다. 일본에서 시작하여 요즘은 유럽에서도 시행되는 마이너스 금리,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까지

이어진 양적 완화가 좋은 예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역설적으로 실비오 게젤Silbio Gesell ¹⁹ 의, 순환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Stamp Scrip 구상을 현실에 구현한 것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는 정부가 자금공급의 주요한 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과거의 조세국가의 방식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일반적현상이었던 국가기능의 축소는 철회되었다.

물론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의 경우 국가로 이전된 자금은 나중에 조세수입을 통하여 되갚아야 한다.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국채매입은 국채이자율을 대폭 떨어뜨리겠지만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원금상환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화폐가 국가화폐가 아니라 한국은행권, 즉 중앙은행권인 한에서,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정부는 차후 중앙은행에 국채를 되갚아야 한다.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모두 국가기구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금상환은 장래의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는 조세기반 화폐창조라고도 말할 수 있다. 물론 독일의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도 마이너스인 현황을 고려하면, 차환을 통해 되갚고 계속 상환을 지연할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도 국채는 중앙은행 자산의 증대이고 정부의 빚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국채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의 성격보다 더 중요한 점은 어디에 쓰이는가의 문제, 곧 용도의 문제이다. 양적 완화로 조성된 자금이 부실은행 구제나 한계산업 구조조정에 투

¹⁹⁾ 마이너스 금리에 기초한 화폐를 실비오 게젤(1862-1930)은 '자유화폐'Freigeld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구상은 프르동이나 중농주의자의 화폐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브레튼우즈 질서로 귀착된 전후 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케인즈는 무역수지의 흑자와 적자를 청산하는 시스템(International Clearing Union - ICU)을 제안했는데, 비록 미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러한 제안의 핵심은 화폐유통의 보장으로서 게젤의 '자유화폐'와 유사한 발상이다. '자유화폐'에 관해서는 Silbio Gesell, The Natural Economic Order, Revised edition. London: Peter Owen, 1958; Die natürliche Wirtschaftsordnung durch Freiland und Freigeld. Selbstverlag, Les Hauts Geneveys 1916; 9. Auflage herausgegeben von Karl Walker: Rudolf Zitzmann Verlag, Lauf 1949(PDF 파일: http://www.florian-seiffert.de/doc/my_nwo.pdf) 흥미로운 사실은 실비오 게젤이 토지를 공동체에 귀속시키고 사유재산권은 일종의 용익권으로 이해하여 토지사용료(토지보유세에 해당)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15세 미만의 모든 인구에게 동등한 수당을 주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여되고 오직 손실의 사회화에만 그칠 경우에는 그것은 미래의 조세수입을 담보로 빚을 얻어 특정 자본분파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조세재정적 수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양 적 완화가 손실의 사회화에만 한정되지 않고 구조 조정되어야 할 금융과 생산의 사회화 로 나아갈 때, 또는 생계형 부채탕감이나 공공서비스 체계의 확장과 사회화 등에 쓰인 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4)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for people

영국 노동당에 코빈 대표가 등장한 이래로 영국 노동당의 경제 정책에는 비전통적 금융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들어갔으며, 나아가서 경제자문역인 리차드 머피Richard Murpy는 기본소득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for people 이다. ²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개발은행의 채권을 매입하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개발은행이 국민주택공사 설립, 녹색인프라구축과, 현물 공공서비스확대 등에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책은행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매입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공공인프라 조성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재정건전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게 하는 방식의 양적 완화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²¹⁾

^{20) &#}x27;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qe4people.eu/. 제 레미 코빈의 계획에 관한 간략한 설명으로서 텔레그래프의 기사를 참조하라: "Jeremy Corbyn's QE for the people is exactly what the world may soon need"(http://www.telegraph.co.uk/finance /economics/11869701/Jeremy-Corbyns-QE-for-the-people-is-exactly-what-the-world-may-soon-need.html);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서 Yvette Cooper, "Is Jeremy Corbyn's policy of 'quantitative easing for people' feasible?"(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5 /aug/14/is-jeremy-corbyns-policy-of-quantitative-easing-for-people-feasible).

²¹⁾ 재정건전성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유럽통화동맹을 발목잡고 있고 이는 남유럽의 국가채무 위기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된 지 오래이다. 국채 문제와 관련하여 GDP 대비 재정건전성 지표만을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일례로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250%에 육박하지만 정부부채 중 95% 이상이 자국민을 상대로 빚을 진 것이

물론 국채는 언젠가 조세로 되갚아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남는다. 국채는 언젠가는 어차피 조세추출을 통해 갚아야 하는 것이고, 추출된 조세를 국채 갚는데 사용한다면 재정여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모두 국가기관이므로 손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말은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는다.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데도 국채 상환부담 때문에 재정여력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부담 조세체제와 긴축재정의 기묘한 결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이나 균형재정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겠지만 양적 완화를 굳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 이외의 양적 완화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투자될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지금까지의 국영부문과 구별되는 비국영 공공기관 형태로 조직하고 그 지분을 비상장 증권형태로 유동화하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직접 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이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소유하는 것인데, 중앙은행의 자산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개정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분매입이 아니더라도 채권 매입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별도의 국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의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도록 하며, 별도의 국책금융기관이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공공서비스 체계를 사회화하고 녹색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빈곤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은 이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적 완화로 빈곤가구의 소득보전을 하려고 한다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단은 없다. 이는 선별적 현금수당이든 보편적 기본소득이든 마

므로, 그것을 빼면 일본 중앙은행의 보유분을 포함해도 일본의 정부부채 수준은 160%로 떨어진다. 국채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인데도 일본 금융기관과 일본 국민들이 열심히 국채를 사주고 있어서 정부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데 큰 문제가 없다. 결국 남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해명하려면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대외건전성을 따져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유럽 국가의 국채는 유럽중앙은행, IMF,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들여온 외채가 대부분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정부부채가 GDP 대비 10% 수준에 불과했던 1998년경부터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에 대한 기우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수입된 한국과 비교할 때 일본의 예는 좋은 대조가 된다.

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개별 국민에 대한 직접적 소득이전은 중앙은행의 자산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설령 중앙은행이 개별 시민의 부채까지도 자산 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사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수당은 개별 시민의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지 개별 시민이 국가에 대해서 지고 있는 부채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지 개별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수당은 결코 중앙은행의 자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밀튼 프리드먼이 과거에 주장하였던 방식, 즉 중앙은행의 자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밀튼 프리드먼이 과거에 주장하였던 방식, 즉 중앙은행이 개별 시민에게 현금 소득을 직접 이전하는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시민에게 유동성이 공급되면 될수록 중앙은행의 부채만 늘어난다. 이와 같은 현금소득 보장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하며, 결국 개별 시민에 대한 현금이전의 재정기반으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도, 국채매입을 통해 중앙은행이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가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이전을 하는 방법밖에는 가능하지 않다 ²²⁾

현금이전과 관련된 이와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는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공공화하는 유력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조세로 국영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중앙은행이 직접 지분을 소유하거나 국책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하고 이 기관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사회화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은 금융과 생산기업의 사회화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연기금을 이용한 사회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연기금이 직접 소유할 경우에 연기금의 재정기반이 문제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반론을 피하는 방법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연기금이 인수하도록 하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정부가 재벌 기업의 사회화에 활용하는 것이다.

²²⁾ 이러한 방식의 기본소득 지급에 관해서는 John Aziz, "Basic income will be at the core of monetary policy in the 21st century", Basic Income News(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5/basic-income-monetary-policy/)

5) 전액준비제도full reserve banking 와 기본소득

위에서 살핀 정책 수단들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한 '인민을 위한 양적완화'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나아간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다. 즉 더 높은 단계의신용의 사회화를 통하여 기본소득 도입이나 공공서비스 체계의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8년 이후로 다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전액준비제도 full reserve banking를 도입한다면,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화폐발행의 규모와 배분 기준은 의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개인에게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일정량의 화폐를 동등하게 나눠주며, 더 많은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는 빌려주고,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화폐발행으로 직접 재정을 대는 새로운 사회화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²³⁾

전액준비제도는 민간이 맡고 있던 신용창조 기능을 국가가 독점하는 국가화폐sovereign money 시스템이다. 물론 전액준비제도는 사적 자본주의의 폐지를 뜻하지 않는다. 전액준비제도 하에서도 투자은행 기능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부분준비제도로 창조된 신용화폐가 투자은행에 몰려들고 금융버블을 만드는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는 사실상 주요 금융기관을 국가가 소유하더라도 민간은행의 신용창조는 허용되는 과거의 은행자본주의 시대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신용의 사회화이다. 이는 단순한 금융통제나 주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회화를 훨씬 초과하는 단계로서, 금융자본주의의 사실상의 폐절을 뜻할 것이다. 24 각종 금융규제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게된 오늘날 이와 같은 전액준비제도로의 전환은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IMF까지도 보고서에서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25

²³⁾ 독일의 헬무트 크로이츠Helmut Creutz는 요제프 후버Josepf Huber의 '완전화폐Vollgeld' 구상에 의지하여 기본소득 실현방식을 새로운 화폐제도와 연관시킨 바 있다: H. Creutz, "Vollgeld und Grundeinkommen", Zeitschrift für Sozialökonomie Nr. 133 vom Juni 2002, S. 14-19; Josepf Huber, Vollgeld. Duncker & Humblot, Berlin 1998.

²⁴⁾ 여기에 대해서는 금민, "금융자본주의와 대안화폐론", 『말과 활』 2호(2013년 10-11월), 337 면 이하

²⁵⁾ 이는 이미 1930년대 공황기에 프랑크 나이트Frank Knight, 헨리 사이몬스Henry Simons 등 시카 고 대학 학자들이 참여했던 시카고 플랜에서 국가화폐 시스템sovereign money system 이라는 이름

6) 기본소득 재정기반과 사회화 전략

이처럼 기본소득 전략은 조세체제 개혁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공동소유 형태나 사회화 모델과 결합할 수 있고, 디지털공유재에 기반한 공유경제모델이나 전액준비제도 등도 기본소득 재정모델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모델들과 조세형 모델을 결합시킨 혼합형 기본소득 모델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과 공공서 비스의 재원을 분리하여 조세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다른 한편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 지분매입을 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확충하는 절충적인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기본소득 도입 그 자체로 금융과 생산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의 재원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식은 탈자본주의 이행의 진전 단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의 두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제약할 것이며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노동으로부터 활동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다. 그것은 분명 비시장적 주체의 탄생에 조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개인의 구성방식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체의 수준에서의 사회화형식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그 개념상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허문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주체의 새로운 사회화 방식이며 시장적 주체를 벗어나는 커다란 도약이지만, 그 자체로서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화는 결코 아니다. 이는 기본소득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엿보고자 할 때 기본소득 재원 문제를 사화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조세형 기본소득을 넘어서서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화로부터 기본소득 재원의 상당 부분이 마련될 때 해방적 기본소득의 기준인 충분성이 더 많이 보장될 것이며,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인 노동력의 탈상품화도 더욱 촉진될 것이다.

아래 논의되었고, 부채기반 화폐를 부채 없는 국가화폐로 바꾸는 것을 시카고 플랜의 주장에 1936년 어빙 피셔Irving Fisher 가 지지했으며 제임스 토빈James Tobin 등 당대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찬성했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밀튼 프리드만도 당시에는 화폐와 신용창조에 대해서는 국가독점을 옹호했었다. 한편 IMF는 2012년 워킹 페이퍼에서 1930년대의 시카고 플랜과 어빙 피셔의 논의를 재론한다: Jaromir Benes/Michael Kumhof, IMF Working Paper, WP/12/202, The Chicago Plan Revisited. 올 6월에 예정된 기본소득 국민투표, 2013년에 실시된 최고임금상한제 국민투표 등 주요한 경제개혁 현안에 대한 국민투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2016년 말에 전액준비제도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 중이다.

기본소득 전략은 그 자체로는 생산과 금융의 사회화 전략은 아니지만, 조세개혁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단계에서도 노동체제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화 전략으로 이어지는 이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동시에 다음의 사실을 드러낸다. 즉, 기본소득이 조세개혁을 넘어 더 확고한 재정기반을 확보하려면 조세형 도입모델을 넘어서서 생산과 금융의 사회화 전략과 결합하여야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만 지급액수와 효과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더욱 해방적인 성격이 부여될 것이라는 점이다.

Ⅵ. 기본소득의 정치 전략적 의의

1) 조세정치적 의의

하지만 어떤 재정모델을 택하든지 왜 선별적 현금이전이 아니라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현금이전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글에서 선보인 발상, 노동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발상에서는 기본소득이 선별적 현금이전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노동능력이 없거나 실업상태인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선별적 현금이전은 애초부터 노동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한 제도들은 존재하는 노동체제의 폐해나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완하는 기능을 가질 뿐이다. 반면에 보편적 노동권을 전제하고, 획기적인 노동시간단축을 시행하며,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에게 평균적으로 보상한다는 발상은 정규고용의 임금에 큰 손해를 입히지 않고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 불안정노동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 결국 노동체제를 전반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발상은 보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선별적 현금이전보다 재분배에 효과적인가'라는 문제는 전통적인 논쟁구조 내에서도 답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기본소득의 불평등 시정효과가 저소 득층에 대한 선별적 현금이전보다 더 큰가라는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다. 조세형 기본 소득의 경우 세수가 누진직접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면 선별적 현금이전보다 기본소득 이 더 큰 불평등 시정효과를 낳을 것이다. 간접세 중심체제라면 효과는 반감되거나 심 지어 역진적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따져야 할 문제는 누진직접세에 근거한 기본소득은 동일한 정도의 누진직접세에 근거한 선별적 현금이전보다 불평등 시정효과가 더 큰가라는 문제이다. 사실 이문제의 답은 간단하다. 일단, 중산층에게도 세금으로 낸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기본소득을 돌려주는 경우라면 사회전체적 수준에서 재분배 규모와 불평등 시정효과가 기본소득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재분배 규모가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불평등 개선이라는 매우 제한된 관점에서도 그러할까? 동일한조세제도 하에서 중산층에게 줄 것을 저소득층에게만 준다면 불평등시정효과는 더 크지 않겠는가?

코르피와 팔메^{Korpi and Palme, 1998}가 발견한 '재분배의 역설'은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선별복지일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고 보편복지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하다는것인데, 이는 사실 조세정치의 작용 때문이다. 코르피와 팔메는 이러한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를 다음의 공식으로 설명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되는 금액 =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정도 × 재분배 규모〉. 만약 재분배 규모가 일정하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은 커져야 한다. 하지만재분배 규모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다.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정도와 재분배규모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중산층 등 다른 계층에서재분배 규모를 키우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²⁶⁾

²⁶⁾ Korpi and Palme,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3, No. 5 (Oct., 1998), pp. 661–687

코르페와 팔메가 발견한 재분배의 역설은 소득에 반비례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줄수록 재분배 규모가 줄어들고 재분배 기능이 저하되는 역사적 경향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역설은 '열등처우의 원칙'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도 있다. 즉, 현행 복지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를 집중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차상위 계층보다 더 부유해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분배 규모는 작아진다. 작은 재분배 규모는 재정지출 규모도 작게 만든다.

누진직접세 중심의 조세체제에 입각한 기본소득의 경우, 재분배기금의 조성에는 차등적으로 기여하지만 1/n의 동등분배로 나눠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분배규모가 크면 클수록, 즉 GDP 대비 기본소득재정의 크기가 크고 누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전 소득과 기본소득 지지급액을 포함한 세후 소득을 비교할 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집중화지수도 높아진다. 자본유출이나 부자들의 조세저항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다수 민주주의로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누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본소득 재정규모를 늘리는데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고 사태를 단순화할 수도 있다. 물론 현실의 조세정치는 다수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라든지 자본파업에 대한 우려라든지 고용문제라든지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그럼에도 누진직접세 체제에서는 기본소득이 선별적 현금이전보다는 확실히 강력한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27)

2) 공통의 요구와 포풀루스 Populus의 형성

조세정치의 좁은 틀을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정치 전략적 가치

^{*}자료: Korpi and Palme (1998)

위 그림의 가로축은 저소득층 집중화 지수index of targeting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재분배 규모income redistribution를 나타낸다. 집중화 지수가 음수일수록 저소득층에 더 집중해서 복지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인데, 그림에서 보면 저소득층에 집중할수록 재분배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²⁷⁾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다고 가정할 때에는 높은 세율의 평률세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여도 동일 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080 │} 독일 좌파당 Die Linke 대표 카티아 키핑 Katja Kipping 초청강연회 자료집

를 따져보자. 그 장점은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은 공통의 요구가 될 수 있으며, '위와 아래'의 구도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아래'를 하나의 포풀루스로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실업자는 일자리를 원하며, 불안정노동자는 소득안정성과 고용안정성을 원하고, 모든 노동자는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는 노동시간단축을 원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상이한 요구를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 결합하고 연관시키는 매개 요구가 될 수 있으며, 상이한 요구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다양한 '아래'로부터 제기될 부분적인 요구강령들, 예컨대 파견법 철폐나 간접고용 폐지, 최저임금 인상이나 고용보장 등과는 분명 다른 차원의 요구이지만 이러한 요구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체제 전환의 전체적 프로그램 속에서 이와 같은 부분 요구들을 하나의 연동된 경제적 과정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근저요구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여러 상이한 요구들을 매개하고 연관시킨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보편적 요구라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모든 다른 요구들이 부분적인 요구들인 반면에 기본소득은 공통적인 보편요구라고 볼 수 있다. 주체는 요구를 통하여 탄생한다. 개별적인 요구들은 부분적인 사회운동 주체들을 탄생시킨다. 장애인 이동권,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 교육권과 노동권 등은 장애인 주체를 탄생시켰으며, 여성 주체는 근대적 여성참정권 요구속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고 더 많은 요구들을 통하여 확장되었다. 노동운동의 요구들은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주체를 등장시키고 확장시켰다. 하지만 정치적 주체는 보편적 요구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정치적 주체를 탄생시킬 보편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나 사회주의와 같은 요구와 비교할 때, 기본소득은 개별 시민에게 체제 대안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간접고용 금지 등 다른 개별적인 요구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권리로 다가간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개별 시민에게 개별적 권리로 다가감에도 그것은 모두의 권리이며 이와 같은 장점 속에서 아래로 부터 사회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동질적인 정치적 주체로 탄생시킬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불안정노동체제의 등장은 근대물리학으로부터 연원하는 단일한 대중 개념을 해체하였다. 대공장에 남아 있는 산업노동자층은 아마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단일한 대중의 마지막 사회적 현실태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대공장 산업노동자 역시 앞으로 형성되어야 할 노동자계급의 일부, 형성되어야 할 대중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서 근대적 문맥의 대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렇기에 대중은 이미 단일하게 형성되어 있고 외적 작용에 대하여 단일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 후에 대중에 대한 개입으로서 정치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언제나 의외의 반응 앞에 놀라게 될 수밖에 없었다. 존재하는 것은 단일한 대중이 아니라 해체된 개별들이며 이를 어떻게 결합된 대중으로 재형성할 것인가가 정치 전략의 핵심 문제가 되어야 한다. 대중형성, 또는 지난 세기에 통용되었던 전통적인 어법으로 말하자면, 계급형성의 관점에서 정치 전략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관건적인 문제는 어떻게 실효적인 공통 요구를 형성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공통의 요구를 많은 개별에게 기입하고 하나의 대중으로 형성할 것인가이다. 비록 이 글에서 자세히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2008년 이후의 자본주의 세계가 겪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사태들은 기본소득이 그러한 실효적 공통 요구가 될 잠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8)

²⁸⁾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의 포데모스 운동에서 기본소득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로서 금민, "포데모스, 좌파 포퓰리즘의 가능성과 한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4호(2015), 268—313; 포괄정당과 기본소득의 관계에 관한 고찰로서는 금민,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가능성 - 유럽과 한국의 비교", 월간 『좌파』, 27호(2015년 7월호), 60-80.

